

이 책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을 문제의 시각에서 그 증상을 진단하고 처방하려는 소위 원인(cause)→결과(effect)의 환원주의적 접근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물론 원인→결과의 정형화된 시각으로 인간현상을 밝히려는 시도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총체적인 시각이 요청되는 청소년문제에 원인→결과의 패러다임을 적용할 경우 그 패러다임에 내재한 오류가 명백히 드러남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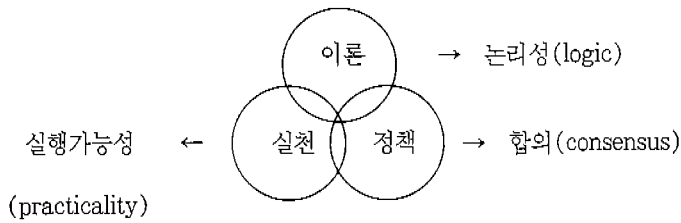
검은색 안경을 쓰면 온세상이 검게 보이는 것과 같이 청소년에 대한 이와같은 정형화된 시각은 청소년의 삶을 왜곡시킵니다. 이 패러다임으로 현상을 들여다보면, 현상을 파악하려는 주체(subject)와 파악되는 대상인 객체(object)간의 엄격한 상호분리를 전제로 인식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예컨대, 청소년문제를 인식할 경우에 어른이 주체가 되고 아이들은 탐구의 객체로 분리되어 문제의 원인을 아이들에게서 찾게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 책은 청소년문제는 본질적으로 원인→결과의 정형화된 시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기본가정위에 개발되었습니다. 청소년문제는 본질적으로 실천과 정책지향이어서, 이는 이론적 논의를 중시하는 원인→결과의 접근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청소년문제는 학자(이론가)들의 전문적 논의로 해결되는 문제라기 보다는 이해당사자(청소년, 어른, 사회)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그 조정이 요구되는 정책지향인 동시에 실제적인 장면에서 행동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천지향의 문제입니다.

실천적 맥락에서 청소년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을 전제하는 이 책의 기본철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본질적으로 실천지향이다.

흔히 인간사는 다음의 세가지 문제영역으로 구분됩니다 : 이론, 실천, 정책. 대체로 이론의 영역은 해결의 관전이 논리적 타당성에, 실천의 영역은 실행가능성에 그리고 정책영역은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에 있습니다.



세영역과 해결의 준거

청소년문제가 이론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실천과 정책적 성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소년문제가 원인→결과의 단순한 인과관계로서 분석해 낼 수 없는 복잡한 인간행위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의 대부분이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그들의 합의도출과 즉각적인 실천이 해결의 관건이 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지금껏 우리사회는 청소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민의 광범위한 합의와 즉각적인 실천으로 해결을 모색치 않고 선-이론적 논의, 후-실천의 잘못을 범해왔습니다. 실행가능성과 합의가 청소년 문제해결의 관건이기 때문에 실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청소년 지도자)의 역할이 학자나 전문가의 역할보다 강조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이해해야 한다.

실천의 사태는 이론적인 삶의 세계와는 달리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독특성과 가치의 갈등을 특징으로는 하는 지극한 상황지향적인 장면입니다. 어떤 문제상황이 발생하면 그곳에서 즉시 대처해야 하는 일상의 삶의 사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에 대처하는데 유일한 해결책은 찾을 수 없습니다. 마치 테니스 선수가 자기 코트에 공이 넘어왔을 때 공식에 대입하여 공을 쳐 넘길 수 없는 것처럼, 우선 넘겨 보내고 나중에 따져 보는 것과 같은 상황지향적인 것입니다. 사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행동해야 하는 문제는 유일한 정답(true)을 찾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사려깊은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실천지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문제는 사실(facts)을 발견해내는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meanings)를 만들어내는 예술적 행위의 삶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겠습니다.

의미는 상황지향이며, 상황은 주체와 객체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바로 청소년문제는 어른과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한편의 드라마처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시작된 영화를 감상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시작된 영화를 감상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을 던지는것이 필요합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 영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치 않은가? 이런 시각으로 아이들의 삶을 드러다 볼때 비로소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문제의 해결은 현장 실천가들의 몫이다.

청소년문제의 본질이 실천과 정책지향이라는 점은 바로 청소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 현장 실천가들의 몫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상황에 부딪혔을 때, 전문가나 학자들로부터 정답을 받아 적용할 여유가 없습니다. 신중한 판단과 사려깊은 행동만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실천의 상황에서 현장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음의 한 사례(예컨대, 아시아나 항공기 폭포추락사건)를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교훈은 조종사의 기술이나 조종팀의 지휘 그리고 컴퓨터화된 첨단 기기들의 성능보다도 조종사가 상황에 대처하는 판단능력이 항공기 안전에 훨씬 중요한 것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종사의 행위는 매순간마다 그가 내리는 판단에 의해 좌우되며, 또 그의 판단은 그가 처한 상황때문에 겪는 온갖 개인적·직업적 스트레스나 걱정거리 같은 것들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추락사고는 조종사가 직업적으로 받게 되는 압력이 적어도 간접적 요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대로 기기도 갖추지지 않은 비행장에 두번이나 착륙을 시도하다 실패했고 사고가 일어날 징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번째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만일 그가 아무런 압력을 받고 있지 않았더라면 왜 그렇게 위험스런 착륙을 시도했겠는가? 아마 첫번째 착륙 시도에서 실패한 뒤 기상등을 고려 다른 공항으로 회항했어야 할 것입니다.

악천후에도 목적지에 착륙해야 한다는 압력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항공사가 요구하는 「경제운항의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종사는 이 경우에

「이윤을 위한 비행」과 「안전을 위한 비행」의 갈등적인 사태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 조종사는 무리한 비행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조종사의 판단과 상반되는 것을 항공사가 강하게 요구하더라도 최후의 상황판단과 행동의 수행은 실천의 사태에서 사려깊게 행동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조종사의 몫인 것입니다.

청소년문제에 대처하는 현장지도자들에게도 그 실천자로서의 역할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는 조종사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사려깊은 판단과 행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지도의 문제는 어떤 정형화된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론가나 학자들이 실천의 현장지도자들 또한 그것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시급한 실천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로 실천의 장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실행가능성이 문제해결에 필수적입니다. 정말로 실천의 최전선에 있는 청소년지도자를 제외하고서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지나친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 책은 현장의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청소년 수련활동의 의미와 그 적용에 관한 기본 틀(안경)을 제공해 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들은 이들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창의성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은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자신의 처해있는 상황에 적절하게 변형하고 수정하는 것은 당연히 현장지도자들의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청소년들의 문제를 다루는 일은 하나의 정답을 발견해내는 과학적인 활동이라기 보다 그들에게 의미있는 삶을 안내해주거나 만들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술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의지방의회활동에 관해서

청소년 수련거리 프로그램의 개발은 청소년 지도자나 청소년들이 수련현장에서 다양한 수련활동을 수행하려고 할 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충실한 안내서가 되고, 알기 쉽고 적용하기 쉬운 지침서가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현장의 특수한 상황을 일일이 고려할 수 없는 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여러가지 종류의 수련거리 교재를 개발했는데 ‘청소년 모의 지방의회활동’은 그 가운데 민주시민과 공공시민의 자질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민주주의에 대한 기반은 더욱 확고히 다져지고 있는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요 민주주의 훈련의 학교인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 훨씬 넘었다. 지방정치에서부터 민주주의적 제도와 문화가 뿌리내리지 않고는 중앙정부의 민주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보통의 시민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담당할 청소년들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운영에 대한 수련교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교재를 개발하였다. 의회활동은 모의법정활동과 더불어 민주주의적 훈련을 배울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련거리이며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청소년을 위한 교양 및 훈련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다. 투표에 대해서, 또 회의의 진행에 대해서 배우고 또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남의 의견을 듣는 이러한 훈련을 청소년들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습득한다면 장차 이나라의 민주주의는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나 청소년 지도자들은 이 교재에 나타난 모의 지방의회활동을 통해서 지방의회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더불어 실천적인 활동, 의회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습득하기 바란다.

이 수련거리는 이론적인 책이기보다는 실제적인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 1부에서는 지방의회활동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지방의회란 무엇인가를 알기위해서 지방의회에 관계된 배경과 이론적 지식을 문답식으로 설명하였고 가능하다면 그림이나 도표를 사용하였다. 약간 지루한

감도 있지만 제 1부를 읽는 것이 제 2부에서 지방의회활동을 실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제 1부는 3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기초,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다루고 있다.

제 2부에서는 제 1부에서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선거에서부터 지방의회활동의 평가 및 감시에 이르기 까지 지방의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집에 될 수 있도록 꾸몄다. 지방의회활동의 프로그램에 포함된 내용은 지방의회의 구성, 개원식과 원구성을 포함한 지방의회활동, 지방행정에 대한 질의 답변, 그리고 지방의회활동 평가가 있다.

특히 특별칸이나 부록을 통해서 실제로 지방의회활동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본문에 다룰 수 없을 때 활용토록 하였다. 또 이 책과 함께 나온 청소년을 위한 의회활동 자료집을 참고해서 모의 지방의회활동을 수행한다면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이다. 7개로 구성된 각 모듈은 그 내용은 다르지만 내용의 구성형태는 유사하다.

개관에서는 그 모듈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 모듈의 구성을 요약한다.

목표에서는 그 모듈에서 제시된 다양한 하위활동을 수행하는 목적과 그 활동에서 얻어질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였다.

활동과정에서는 그 모듈의 목적에 따라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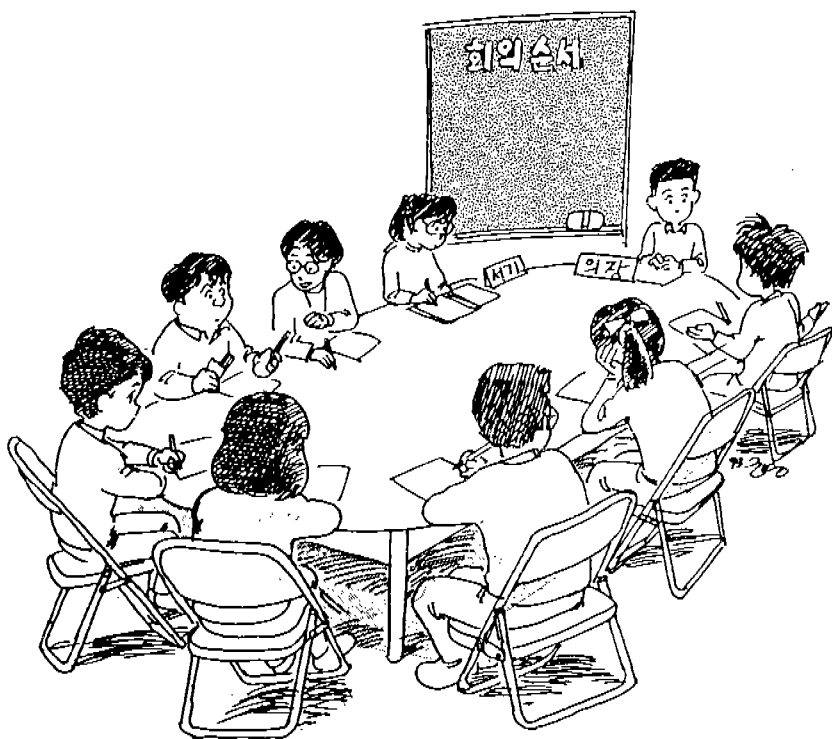
이 교재에 나타난 내용들이 지방의회활동을 모두 포함할 수는 없다. 각 단체나 시설,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 기관의 사정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하여 이용하면 편리하리라 생각한다. 이 수련거리 교재에 나타난 내용을 소화해서 장기적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되고 단기적으로는 선거나 회의, 그리고 지방의 문제를 스스로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문화를 습득한다면 유용할 것이다.

지방의회란 무엇인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기초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여기에서는 뒤에서 제시될 지방의회활동에 관한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다룬다. 지방의회활동의 배경이 되는 지식과 지방의회활동의 법적근거를 습득해서 지방의회활동의 이해를 높인다. 제1모듈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기초를 다루고, 제2모듈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제3모듈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다룬다. 그리고 각 모듈에서는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특별칸으로 만들어 제시하였다. 제1부에서 제시되는 이론적 질문들은 여러가지의 법률과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결정되는 지방의회의 여러가지 활동 가운데 가장 간단한 것들만 골라서 제시하였다. 제1부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지방의회활동의 기초적 지식의 대강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기초



개 요 이 모듈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다룬다. 지방의회의 정의에서 부터 지방자치나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다루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한다. 특히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의 방식을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문답식으로 전개해서 간단하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목 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기초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의 목표는 지방의회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력을 높이는 데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기본정신이 무엇이며 왜 지방의회활동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였으며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문답식으로 전개하였다.

과제 1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정의

- 지방의회를 간단히, 그리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 핵심은, “지방의회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대표자로서 시·군·구의 지방의회를 구성해서, 그 의회가 지방정부의 의사와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정책의 올바른 수행을 감시하는 제도”이다.
- 중앙정부의 입법기관인 국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방의회란 기본적으로 ;
 - 1)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 2)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통합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 3)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 4) 국정을 감시, 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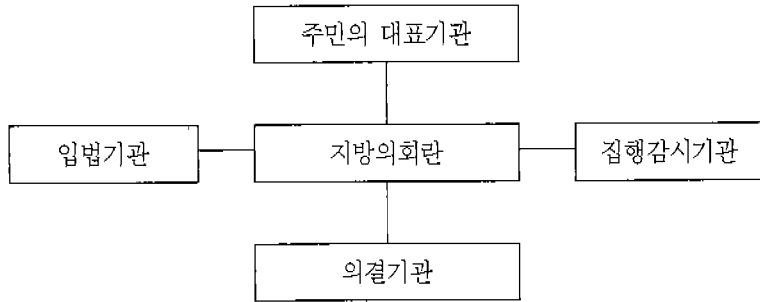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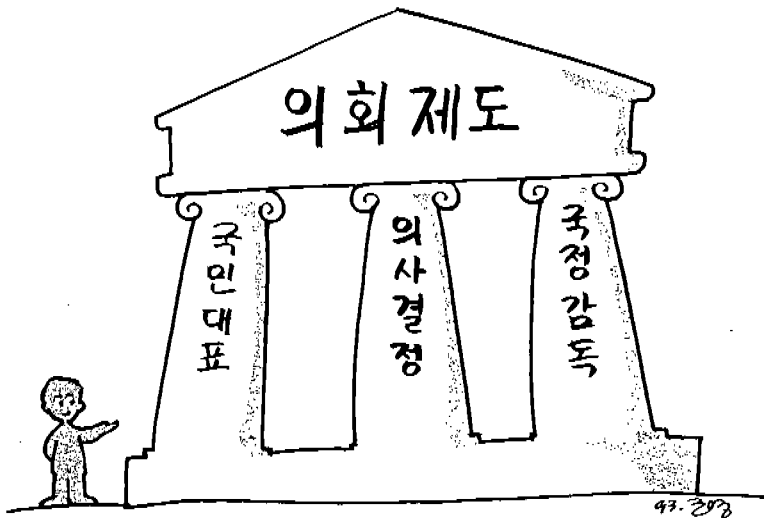


그림 1 지방의회의 정의

과제 2 의회제도의 기본원리(基本原理)



- 지방의회의 기본원리는 의회의 정의에서도 약간 언급되었듯이 세가지가 있다. 국민대표의 원리, 법안 및 정책심의의 원리, 국정감독의 원리가 바로 그것이다.

1) 국민대표의 원리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들 대표자로서 의회를 구성하여 의회가 국민대표 기관의 지위에서 입법 또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국정을 통제한다는 원리이다.

- 2) 의사결정의 원리란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법안이나 주요정책을 심의하여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의회는 이때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민주적 원리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심의의 원칙, 공개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법안 및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의사를 결정한다.
- 3) 국정감독의 원리란 각 나라의 정부형태나 권력구조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국정전반에 걸쳐 감독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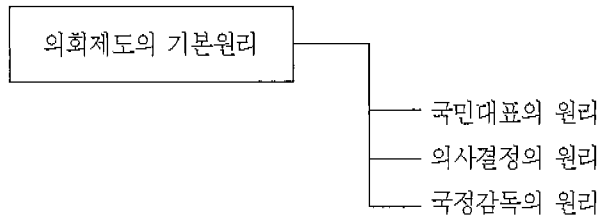


그림 2 의회제도의 기본원리

과제 3 지방의회의 의미(意味)

- 지방의회의 근대적 의미는 대표의 관념에 기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이다.
- 우리나라의 헌법과 관련 제법규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되는 지방의회는 주민으로 부터 공선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특별칸 : 지방자치의 의미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원천일 뿐만아니라 그 학교이다.”

—James Bry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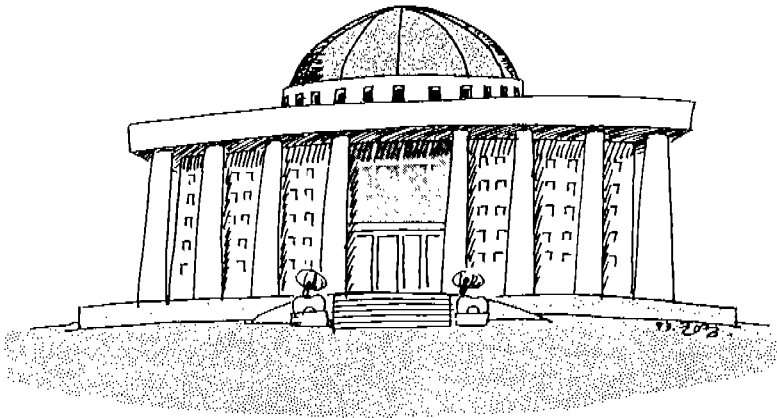
“중앙에서 민주화를 촉진하고자 한다면 말단에서 자치를 철저히 실시해야만 한다.”

—Herman Finer—

“지방자치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연관되어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여론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Panter & Brick—

과제 4 지방의회와 국회의 관계



- 지방의회와 국회는 그 기본적인 정신과 원리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나라에 따라서 그 조직이나 운영방법에 있어서 다른 경우도 없지 않지만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그 기본 축을 같이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 다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기관인데 반하여 국회는 국가통치기관인 까닭에 그 성격이나 기능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점을 지닌다.
- 특히 지방의회와 국회는 다같이 입법권을 가지지만, 지방의회의 입법권은 조례제정권에 국한되나 국회는 법률제정권을 가진다.
- 지방의회와 국회는 다같이 헌법에 근거하지만, 국회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거의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의회는 그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조직, 권한, 운영 등 모든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 따라서 지방의회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고 국회에 의한 입법상의 감독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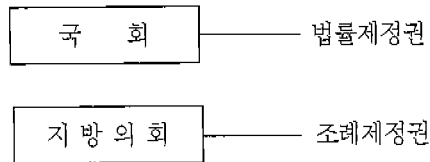


그림 3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계

과제 5 지방자치(地方自治)의 의미

- 지방자치란 지방의 문제를 지방주민이 스스로 처리하는 지방제도로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의 행정사무를 스스로의 의사와 스스로의 책임하에 처리해 나가는 제도라 할 것이다.
- 국가가 지방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데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
- 첫째는, 중앙정부가 지방에 자기의 기관을 두어 이를 통해서 집행

해 나가는 방법인데 이를 관치라 한다.

- 둘째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의사와 스스로의 책임하에 이를 수행해 가는 방법인데 이를 자치라 한다.
- 따라서 자치란 관치와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할 개념으로 관치를 국가의 관료에 의한 지방행정이라고 한다면 자치는 그 지방주민에 의한 지방행정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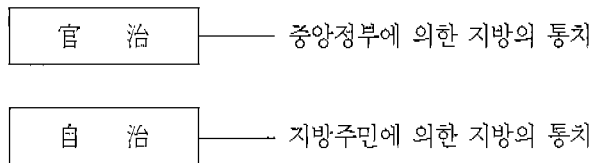


그림 4 官治와 自治의 차이

과제 6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 지방자치는 그것이 민주주의의 뿌리이면서 또한 학교라는 점이다.
- 지방자치란 지방분권주의에 입각하여 지방이라고 하는 기초적인 행정단위에서 지방주민의 주변의 일들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 행정인 것이요 그래서 이를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보루요 방과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지방자치는 전제화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권력비대화에 대해 제동을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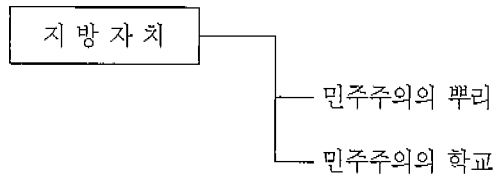


그림 5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과제 7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눌 수 있다.
- 상급단체라 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도(道), 특별시(特別市), 직할시(直轄市)가 있고 하급자치단체라 할 만한 단체는 시(市), 군(郡), 구(區)가 있다.
- 시와 군은 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단체이며 자치구는 특별시 또는 직할시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자치단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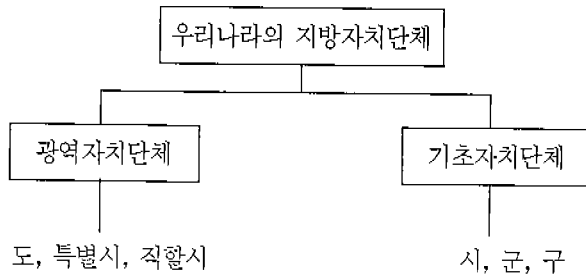


그림 6 자치단체의 종류

과제 8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 서구 제국과는 역사적 환경이 판이했던 우리나라는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로 일관되어 지방행정도 국왕이 임명하는 지방관에 의해 수행되었다.
- 조선시대의 향청(鄕廳) 제도가 지방의 대의제도와 비슷했고 갑오경장이후 향회제도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의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의 효시라 할 만큼 매우 발전된 제도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 건국이후에는 1대부터 3대까지, 즉 1952년부터 1961년까지 불완전한 가운데 지방의회가 존재했으나 1961년 5.16 군사쿠테타 이후에는 30년간의 긴 휴면기를 맞이하였다.
- 1991년 3월 26일 시, 군, 구 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1991년 6월 20일 시,도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부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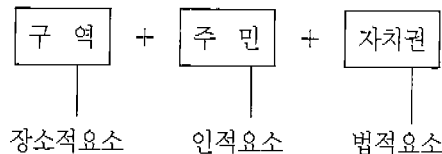


그림 7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자료 : 김형배, 지방자치론(서울 : 계명사, 1988) p.78

특별칸 : 우리나라의 광역지방자치단체 현황

● 광역자치단체 · 의회 ·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부산직할시
부산직할시의회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대구직할시
대구직할시의회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의회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교육위원회

광주직할시
광주직할시의회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대전직할시
대전직할시의회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위원회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위원회

강원도
강원도의회
강원도교육위원회

특별칸 :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현황

● 기초자치단체 · 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북구	양천구	서초구
종로구의회	성북구의회	양천구의회	서초구의회
중구	도봉구	강서구	강남구
중구의회	도봉구의회	강서구의회	강남구의회
용산구	노원구	구로구	송파구
용산구의회	노원구의회	구로구의회	송파구의회
성동구	은평구	영등포구	강동구
성동구의회	은평구의회	영등포구의회	강동구의회
동대문구	서대문구	동작구	
동대문구의회	서대문구의회	동작구의회	
종량구	마포구	관악구	
종량구의회	마포구의회	관악구의회	

부산직할시

중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중구의회	영도구의회	남구의회	사하구의회
서구	부산진구	북구	금정구
서구의회	부산진구의회	북구의회	금정구의회
동구	동래구	해운대구	강서구
동구의회	동래구의회	해운대의회	강서구의회

대구직할시

중구	서구	북구	달서구
중구의회	서구의회	북구의회	달서구의회
동구	남구	수성구	
동구의회	남구의회	수성구의회	

인천직할시

중구	남구	북구
중구의회	남구의회	북구의회
동구	남동구	서구
동구의회	남동구의회	서구의회

특별칸(계속)

광주직할시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동구의회	서구의회	북구의회	광산구의회
대전직할시			
동구	서구	대덕구	
동구의회	서구의회	대덕구의회	
중구	유성구		
중구의회	유성구의회		
경기도			
수원시	송탄시	군포시	포천군
수원시의회	송탄시의회	군포시의회	포천군의회
장안구(비자치구)	동두천시	의왕시	가평군
권선구(비자치구)	동두천시의회	의왕시의회	가평군의회
성남시	안산시	하남시	양평군
성남시의회	안산시의회	하남시의회	양평군의회
수성구(비자치구)	고양시	양주군	이천군
종원구(비자치구)	고양시의회	양주군의회	이천군의회
분당구(비자치구)	과천시	남양주군	용인군
의정부시	과천시의회	남양주군의회	용인군의회
의정부시의회	구리시	평택군	안성군
안양시	구리시의회	평택군의회	안성군의회
안양시의회	평택시	화성군	김포군
부천시	평택시의회	화성군의회	김포군의회
부천시의회	미금시	파주군	강화군
남구(비자치구)	미금시의회	파주군의회	강화군의회
중구(비자치구)	오산시	광주군	웅진군
광명시	오산시의회	광주군의회	웅진군의회
광명시의회	시흥시	연천군	
	시흥시의회	연천군의회	
강원도			
춘천시	삼척시	평창군	고성군
춘천시의회	삼척시의회	평창군의회	고성군의회
원주시	춘천군	정선군	양양군

특별간(계속)

원주시의회	춘천군의회	정선군의회	양양군의회
강릉시	홍천군	철원군	명주군
강릉시의회	홍천군의회	철원군의회	명주군의회
동해시	횡성군	화천군	삼척군
동해시의회	횡성군의회	화천군의회	삼척군의회
태백시	원주군	양구군	
태백시의회	원주군의회	양구군의회	
속초시	영월군	인제군	
속초시의회	영월군의회	인제군의회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	진천군	증원군
청주시의회	보은군의회	진천군의회	증원군의회
충주시	옥천군	괴산군	제천군
충주시의회	옥천군의회	괴산군의회	제천군의회
제천시	영동군	음성군	단양군
제천시의회	영동군의회	음성군의회	단양군의회
청원군			
청원군의회			
충청남도			
천안시	금산군	서천군	서산군
천안시의회	금산군의회	서천군의회	서산군의회
공주시	연기군	보령군	태안군
공주시의회	연기군의회	보령군의회	태안군의회
대천시	공주군	청양군	당진군
대천시의회	공주군의회	청양군의회	당진군의회
온양시	논산군	홍성군	아산군
온양시의회	논산군의회	홍성군의회	아산군의회
서산시	부여군	예산군	천안군
서산시의회	부여군의회	예산군의회	천안군의회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시	장수군	고창군
전주시의회	남원시의회	장수군의회	고창군의회
완산구(비자치구)	김제시	임실군	부안군

특별간(계속)

덕진구(비자치구)	김제시의회	임실군의회	부안군의회
군산시	완주군	남원군	김제군
군산시의회	완주군의회	남원군의회	김제군의회
이리시	진안군	순창군	옥구군
이리시의회	진안군의회	순창군의회	옥구군의회
정주시	무주군	정읍군	익산군
정주시의회	무주군의회	정읍군의회	익산군의회
전라남도			
목포시	여천시	구례군	고흥군
목포시의회	여천시의회	구례군의회	고흥군의회
여수시	동광양시	광양군	보성군
여수시의회	동광양시의회	광양군의회	보성군의회
순천시	담양군	여천군	화순군
순천시의회	담양군의회	여천군의회	화순군의회
나주시	곡성군	송주군	장흥군
나주시의회	곡성군의회	송주군의회	장흥군의회
강진군	무안군	영광군	진도군
강진군의회	무안군의회	영광군의회	진도군의회
해남군	나주군	장성군	신안군
해남군의회	나주군의회	장성군의회	신안군의회
영암군	함평군	완도군	
영암군의회	함평군의회	완도군의회	
경상북도			
포항시	경산시	경주군	상주군
포항시의회	경산시의회	경주군의회	상주군의회
경주시	달성군	영천군	문경군
경주시의회	달성군의회	영천군의회	문경군의회
김천시	군위군	경산군	예천군
김천시의회	군위군의회	경산군의회	예천군의회
안동시	의성군	청도군	영풍군
안동시의회	의성군의회	청도군의회	영풍군의회
구미시	안동군	고령군	봉화군
구미시의회	안동군의회	고령군의회	봉화군의회
영주시	청송군	성주군	울진군

특별칸(계속)

영주시의회	청송군의회	성주군의회	울진군의회
영천시	영양군	칠곡군	울릉군
영천시의회	영양군의회	칠곡군의회	울릉군의회
상주시	영덕군	금릉군	
상주시의회	영덕군의회	금릉군의회	
점촌시	영일군	선산군	
점촌시의회	영일군의회	선산군의회	
경상남도			
창원시	충무시	창녕군	고성군
창원시의회	충무시의회	창녕군의회	고성군의회
울산시	삼천포시	밀양군	사천군
울산시의회	삼천포시의회	밀양군의회	사천군의회
중구(비자치구)	김해시	양산군	남해군
남구(비자치구)	김해시의회	양산군의회	남해군의회
동구(비자치구)	밀양시	울산군	하동군
마산시	밀양시의회	울산군의회	하동군의회
마산시의회	장승포시	김해군	산청군
합포구(비자치구)	장승포시의회	김해군의회	산청군의회
회원구(비자치구)	진양군	창원군	함양군
진주시	진양군의회	창원군의회	함양군의회
진주시의회	의령군	통영군	거창군
진해시	의령군의회	통영군의회	거창군의회
진해시의회	함안군	거제군	합천군
	함안군의회	거제군의회	합천군의회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제주시의회	서귀포시의회	북제주군의회	남제주군의회

지방법원의 권한



개 요 이 모듈에서는 지방의회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다양한 권한에 대해 언급한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조례의 제정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러가지 감시권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지만 이 모든 권한들이 결국에는 지방의 발전과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 지방의 실정에 맞는 발전 프로그램을 추구하자는 데 있다. 이 모듈에서는 의결권, 조례제정권, 예산확정권, 결산승인권, 청원 심사권, 감사권, 선거권, 자율권, 등을 다룬다.

목 표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일과 당연히 해야되는 일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규정된다. 이 모듈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이론적으로 밝힘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활동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인다.

과제 9 지방의회의 권한(權限)

- 지방의회가 갖는 권한은 기초의회든지 광역의회든지 본질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
- 다만 다루는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 서로 다를 뿐이다. 즉 기초자치단체는 국지적이고 독립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적이고 상호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담당한다.
- 지방의회의 법적 권한을 대별하면 주로 의결권과 감시권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의회는 이외에도 원구성을 위한 선거권과 내부조직권, 그리고 자율권의 일종인 의사자율권과 의원신분에 관한 권한 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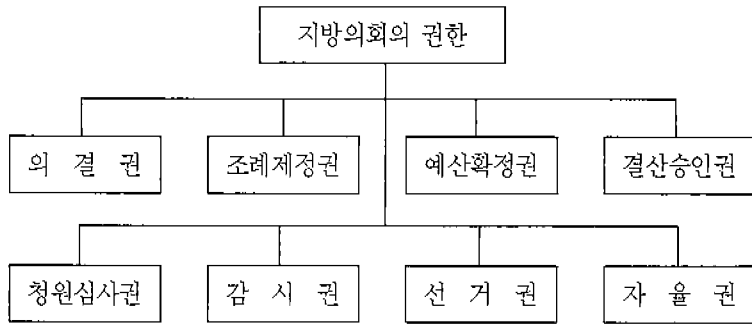


그림 8 지방의회의 권한

과제 10 의결권(議決權)

- 의결권은 지방의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권한인데, 이는 법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서,
 -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2) 예산의 심의·확정
 - 3) 결산의 승인
 -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기입금의 부과와 징수
 - 5)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 6)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7)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8)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9)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10)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11) 청원의 수리와 처리
 - 12)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 13)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이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제2항).

과제 11 조례제정권(條例制定權)

- 자치권 또는 자치입법권으로서의 조례제정권은 헌법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보장된 권한이다.
- 우리나라의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한 형식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것으로서 국가의 법체계의 일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법체계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한 조례도 그 안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 더욱 구체적인 조례제정의 범위는
 - 1) 주민의 복지증진
 - 2) 농업·상공업 등 산업의 진흥
 - 3)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4)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5)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

과제 12 예산확정권(豫算確定權)

- 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준칙이다.
- 여기서 일정기간이란 회계년도를 말하며 1회계년도는 1년이다.
- 국가의 예산을 헌법과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정부가 편성하여 심의·의결한 1회계년도의 국가재정계획이라고 한다면 자치단체

의 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한 회계연도의 자치단체의 재정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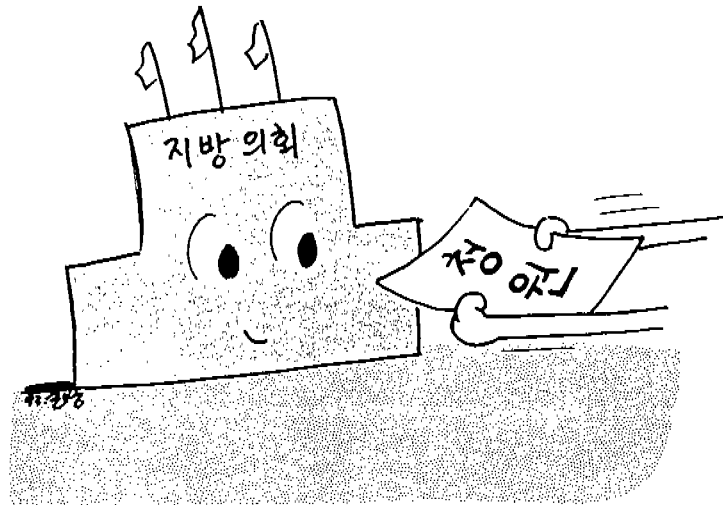
- 이러한 자치단체의 예산은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편성·제출하여 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된다.
- 지방재정을 심의·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의회의 예산확정권이라고 한다.

과제 13 결산승인권(決算承認權)

- 결산이란 예산을 집행한 실적을 말한다.
- 예산을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수라고 한다면, 결산은 이러한 예산의 집행결과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확정적 계수를 의미한다.
- 지방의회는 결산의 승인을 갖는다.
- 의회는 표리의 관계에 있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권한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재정권을 통제한다.
- 의회는 예산을 의결하면서 자치단체의 재정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결산을 승인하면서 그것이 정당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사후에 감시·확인한다.
-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했다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해제시킬 만큼 강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단지 정치적 의미에서 주민에 대한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해제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과제 14 청원심사권(請願審査權)

- 국민이 가지는 권리의 하나로서 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의견 또는 희망을 개진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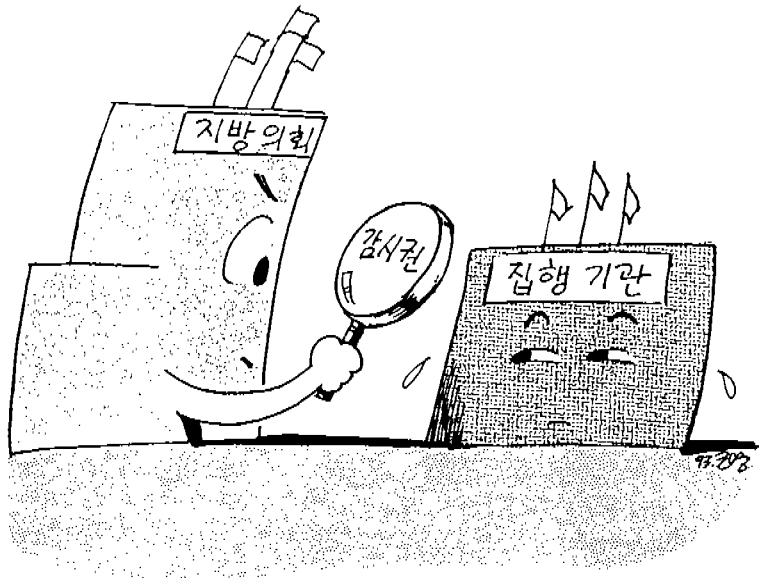


구할 수 있는 국민청구권의 하나

- 지방의회는 지방주민에 의한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심사해야 할 의무와 함께 권리를 가짐
- 주민이 할 수 있는 주요 청원은,
 - 1) 공권력의 사용에 의한 피해의 구제
 - 2)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3)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폐지
 -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5)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모두 청원의 대상이 됨

과제 15 감시권(監視權)

- 지방의회의 감시권이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의 지위에서 자치단체의 사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권한이다.
- 우리나라의 지방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기관분립의 원칙아래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의 장을 다같이 주



민이 직접 선출하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장에게 독립된 지위, 독립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1993년 현재는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고 자치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

과제 16 선거권(選舉權)

- 지방의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또는 그 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다.
- 의회는 의회의 내부조직에 대하여 의장·부의장·임시의장 선거, 분과위원회 위원의 선임, 감사위원 선거와 같은 선거권을 행사하고 광역의회의 경우 기초의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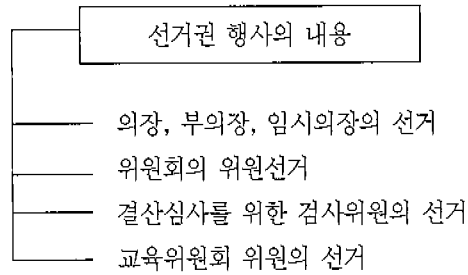


그림 9 지방의회의 선거권

과제 17 자율권(自律權)

- 지방의회는 의회내부 사항에 관하여 집행기관이나 선거민을 포함한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권한을 가진다.
- 지방의회는
 - 1)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63조),
 - 2) 회의 규칙에 따라 내부조직(의장단, 각종위원회, 사무조직)을 자주적으로 조직하며,
 - 3) 개회·휴회·폐회와 회기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며,



그림 10 자율권의 내용

4) 의회 구성원에 대해 의원의 사직허가권, 의원자격에 대한 심사·결의권, 의원의 징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특별칸 : 지방자치관련주요법령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운영과 조직, 그리고 권한 등은 모두 이에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의 근거에 의해 규정된다. 지방자치에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법 :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
(주요내용 : 총강, 주민, 조례와 규칙, 선거, 지방의회, 집행기관, 재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국가의 지도·감독,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 행정의 특례, 부칙)
2. 지방자치법시행령 : 1991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3414호
3. 지방의회의원선거법 : 1991년 5월 23일 법률 제4368호
(주요내용 : 총칙,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선거인명부,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비용, 선거일과 투표, 개표, 당선인, 재선거와 보궐선거,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선거에 관한 쟁송, 벌칙, 보칙, 부칙)
4.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법 :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12호
(주요내용 : 총칙,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에 관한 구역, 선거인명부,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비용, 선거일과 투표, 개표, 당선인, 재선거와 보궐선거,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선거에 관한 쟁송, 벌칙, 보칙, 부칙)
5. 지방공무원법 :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8호
(주요내용 : 총칙, 인사기관, 직위분류제, 임용과 시험, 보수, 복무, 신분보장, 권익의 보장, 징계, 능률, 보칙, 벌칙, 부칙)
6. 지방공기업법 :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1호
(주요내용 : 총칙,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보칙, 벌칙, 부칙)
7. 지방재정법 :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6호
(주요내용 : 총칙, 경비의 부담, 예산결산, 수입, 지출, 계약, 현금과 유가증권, 시효, 재산, 회계관계공무원, 보칙, 부칙)
8. 지방재정법시행령 : 1990년 11월 6일 대통령령 제13156호
9. 지방세법 :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5호

(주요내용 : 총칙, 도세, 시·군세, 목적세, 부칙)

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1999년 3월 8일 법률 제434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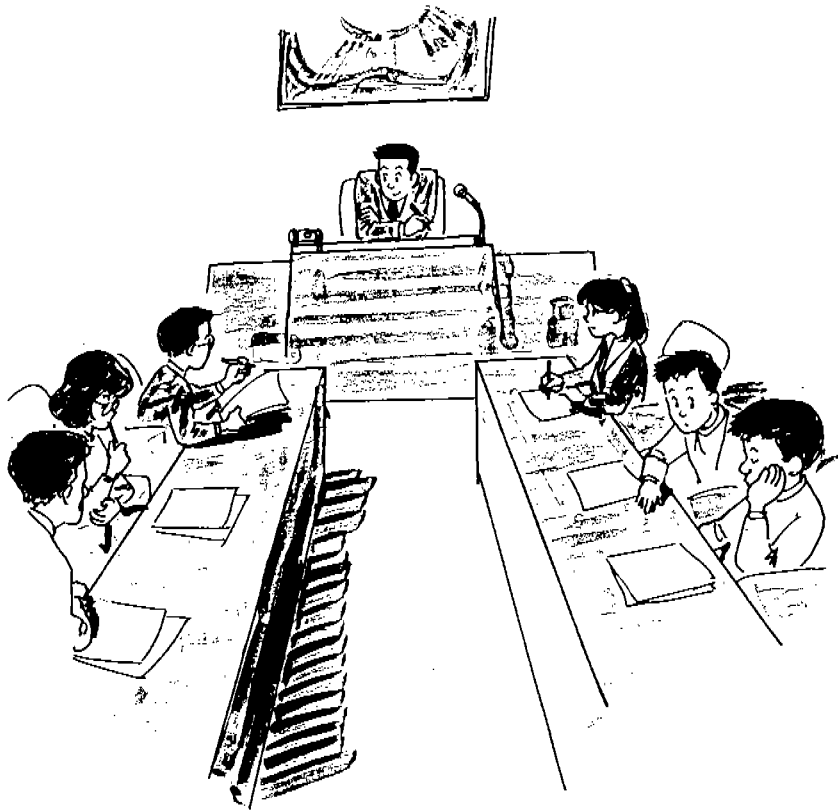
(주요내용 : 총칙, 교육위원회, 교육감, 지도와 감독, 부칙)

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 1991년 4월 23일, 대통령령 제13356호

12.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1호

13.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 1991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3413호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개 요 이 모듈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언급한다. 지방의회의 구성요소와 의원, 그리고 의장단의 구성,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한다. 지방의회를 직접 운영할 때의 규칙과 회의에 주로 쓰이는 용어, 회의록과 그것의 작성 규칙 등도 이 모듈에 포함.

목 표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배우는 목적은 지방의회의 구조적 측면을 밝히자는 데 있다. 어떤 조직과 어떠한 부서가 어떤 근거로 무엇을 하는가를 익힘으로써 시·군·구로 대표되는 기초자치단체와 시·도로 대표되는 광역자치단체의 운영시스템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과제 18 지방의회의 구성요소(構成要素)와 형태

-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단원제를 그 구성원리로 한다.
- 양원제와는 다른 단원제는 회의에서 의사를 보다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고 의회의 경비가 상대적으로 절감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하나의 회의조직체로서의 지방의회는 본회의와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다시 말해서 지방의회는 전체의원으로 구성되는 본회의와 그 일 부의원 만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의회의 안건을 심의·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 위원회란 본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을 위임받아 예비적·전문적으로 심사하는 하나의 내부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에서 심사된 결과는 대외적으로 어떠한 효력도 갖지 못한다.
-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되어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한다.

과제 19 지방의원의 정수

-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정수는 법률로써 정하며 이를 법정 정수라 한다.
- 이러한 의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의원선거법으로 정하는 예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제도는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 의원의 정수는 의회구성 기본이 되는 요소로서 총선거를 실시할 때가 아니면 이를 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조정이 불가피할 때가 있다.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이 확장 또는 축소되거나, 자치단체가 통합 또는 분할 될 때, 그리고 직할시나 시 또는 자치구로 승격된 경우가 그 예이다.

구 분	광역의회의원정수	기초의회의원정수
전 국	866	4,304
서울특별시	132	778
직 할 시 계	152	839
부 산	51	303
대 구	28	182
인 천	27	153
광 주	23	110
대 전	23	91
도 계	582	2,687
경 기	117	526
강 원	54	240
충 북	38	173
충 남	55	223
전 북	52	280
전 남	73	337
경 북	87	404
경 남	89	453
제 주	17	51

표 1 시·도별 의원 정수

과제 20 지방의원의 지위(地位)와 역할

- 지방의회는 구성원인 지방의회 의원은 일정한 임기동안 특별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의원은 임기 4년의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자치단체의 별정직 공무원이다.
- (권리) 의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 의사참여, 의안제출, 청원소개, 모욕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권리를 가지며,
- (의무) 반면에 1) 회의에 출석하고, 2)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3) 청렴·품위유지의 의무를 지고,
- (금지사항)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 외국의 경우엔 지방의원에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이를 인정치 않고 1991년 12월 31일 개정된 현행자치법에는,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청구하여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놓고 있다.

과제 21 의장단(議長團)

-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단위를 가지는데, 의회의 내부조직으로는 일반적으로 의장단과 위원회 및 사무조직이 있다.
- 이 가운데 의장단은 시·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시·군·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의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다.
- 의장은
 - 1)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
 - 2)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

3)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4) 의결에 있어 표결권도 가짐

• 부의장은

1) 의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함

•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거나 불신임 결의 또는 제척의 대상이 된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한편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할 수 있으며 불신임 결의로 의장 또는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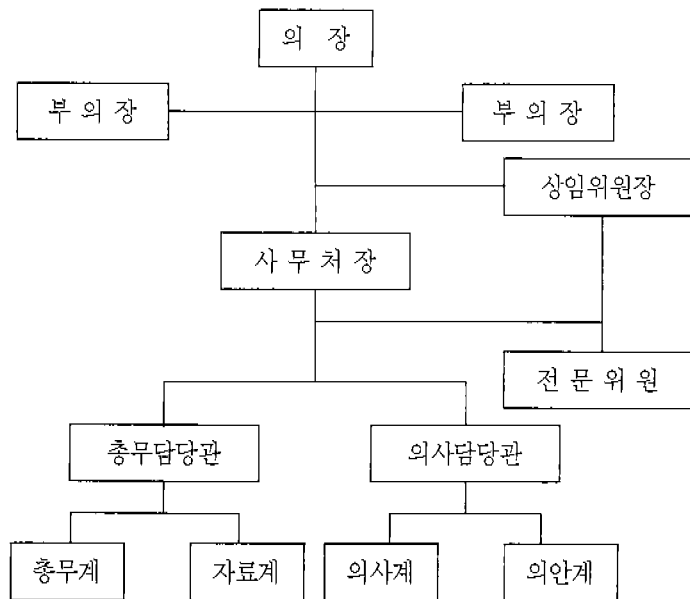


그림 11 시·도의회 사무기구표

과제 22 본회의와 위원회의 차이

- 본회의는 의원전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의 의사를 결정한다.
- 지방의회의 의결·승인·결정이란 바로 본회의의 의결·승인·결정을 의미한다.
-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의회의 경우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먼저 심사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본회의에서의 심의·의결을 위한 예비적 심사로서 모든 안건은 본회의를 거쳐야 하고 본회의의 의결로써 의회의 의사가 결정된다.
- 따라서 법령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본회의에서 이를 모두 처리하게 된다.
- 지방의회는 조례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의회인 시·도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의안을 능률적으로 충분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이를 내부조직으로 설치하고 있다.
- 위원회는 본회의의 심의를 예비적·전문적·기술적으로 처리하는 심의기관이며,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은 대외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거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비로소 의회의 의사로 결정된다.

과제 23 지방의회운영의 회의규칙

- 지방의회의 운영에 근거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이지만 회의 운영에 관한 관례와 행정선례도 무시할 수 없으며, 회의 운영에 있어서 관습과 회의 원칙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 국회의 운영방법도 동일한 회의체라는 면에서 참고될 수 있지만 국회와 지방의회는 상호간 성격과 적용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회의운영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 회의의 규칙으로는 지방자치법과 기타 법령에 따르면
 - 1) 회의공개의 원칙
 - 2) 정족수의결의 원칙

- 3) 의원평등의 원칙
- 4) 과반수의결의 원칙
- 5) 일사부재리의 원칙
- 6) 회기계속의 원칙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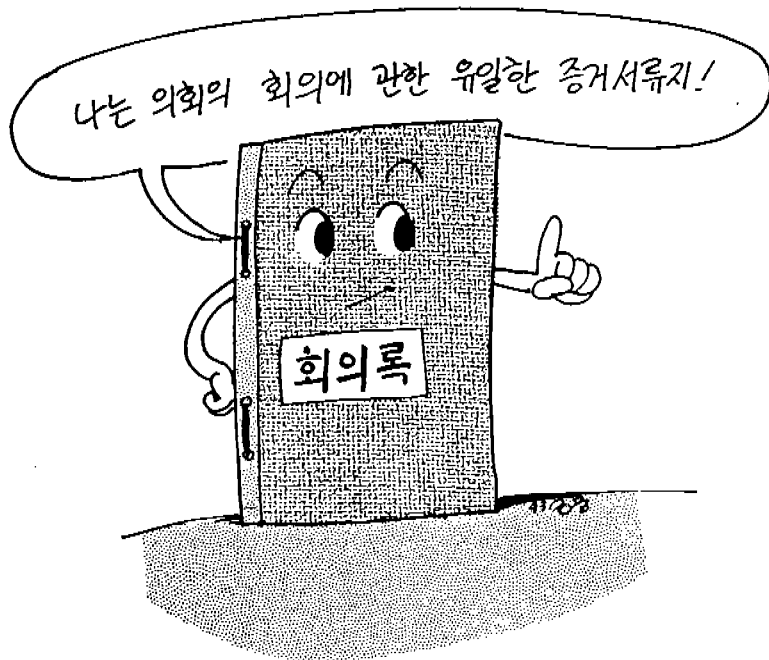
과제 24 지방의회활동에 필요한 주요용어

- 안건 : 의회에 제출되어 의회가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통틀어 안건이라 한다.
- 의안 : 의안은 가장 보편적인 유형의 안건으로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중에 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원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출하는 의결안건을 의미한다.
- 동의 : 동의란 주로 의회의 의사진행 또는 그 절차에 관한 의원의 제의로서 유효하게 발의된 동의는 의안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된다.
- 의제 : 의제란 의회의 회의에 부쳐지는 안건을 의미하나 이는 안건의 제목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건이 심의과정에 놓이게 된 것을 의미한다.
- 발언 : 의원이 의회에서 행하는 질의, 질문, 토론, 제안이유 설명, 동의를 발의 및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등이 모두 발언의 개념에 포함된다.
- 질의 : 질의란 조사대상안건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토론 및 표결에 앞서 의문사항에 대한 설명을 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발언이다.
- 토론 : 토론은 심의안건에 대한 표결의 전제로서 의원이 의안에 대한 문제점 또는 타당성을 밝히고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이다.
- 질문 : 의원은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질문권을 갖는다. 질문은 질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질의가 의제로 된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을 묻는 행위임에 비하여, 질문은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적과 계획, 그리고 의

문이 나는 사항을 묻는 행위이며, 질의는 단지 의제가 된
안건의 심의절차상의 한 과정인데 대하여 질문은 하나의
독립된 의사일정 사항으로 취급되는 점이 다르다.

- 표결 : 표결은 의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개의원이 심의안건에 대
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집계하는 행위를 의미
하며 이 표결의 결과에 따라 의회의 의사가 결정된다.
- 의결 : 의결은 표결에 의하여 확인된 의원의 의사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과제 25 회의록 작성



- 회의록은 현재적 · 동시적인 기록이다.
- 따라서 의회가 소집되어 회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매일매일 호수
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 회의록은 의회의 회의에 관한 유일한 기록이다.
- 그러므로 중요한 증거서류가 되기 때문에 회의의 운영상황, 의원의 발언내용, 의사의 진행과정 등을 그 순서에 따라 하나도 빠짐없이 내용전문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내용전부를 그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본회의 회의록	위원회 회의록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1.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의사일정	3. 출석위원 성명
4. 출석의원 성명 및 수	4.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공무원의 직·성명	5. 출석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6. 심사안건명
7. 제반보고사항	7. 의사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철회에 관한 사항	8. 표결수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9. 위원장의 보고
10. 의사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표 2 회의록 기록 규정사항

과제 26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조직은 기관분립형을 취하고 있다.
- 따라서 기관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여 의회와 자치단체의 장은 그 성립과 존속 그리고 그 기능과 권한에 있어 상호독립의 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 그러면서도 기관간에 어느정도 서로 보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지방자치조직에 있어 기관간의 관계는 상호독립, 상호의존, 상호통제의 관계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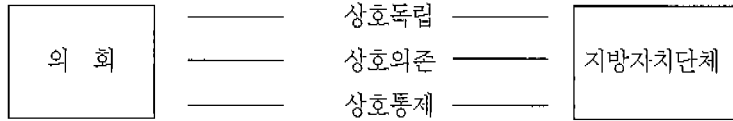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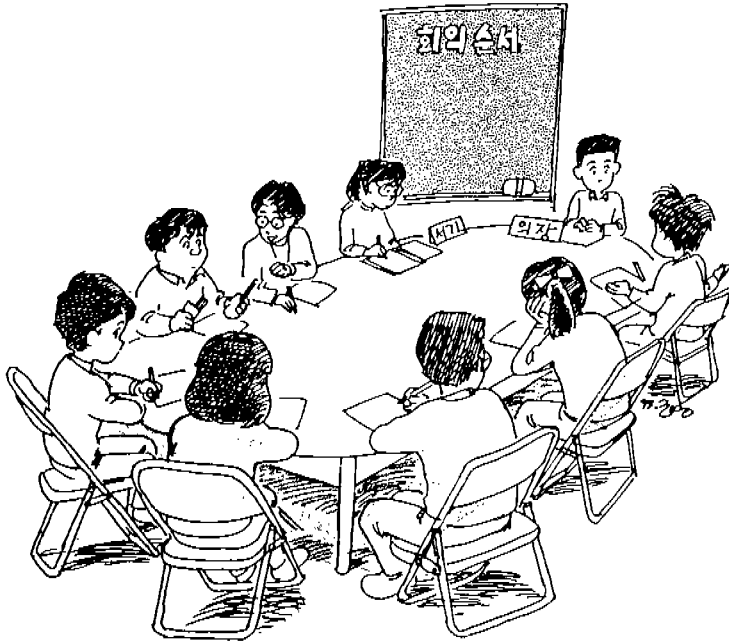


그림 12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관계

특별활동 : 의회식 회의형식



1. 소집과 의사일정

소집 : 소집이란 전 회의원에게 회의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일·시각에 특정장소에 모일 것을 요구함이다. 회의를 소집하는 사람은 보통 의장이지만 집행 기간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집행기관에게 소집권이 있다. 조합의 대회 따위에서는 회장이나 집행위원장이 소집하기로 되어 있다.

의사일정 : 의사일정이란 그 기간의 회의에서 심의될 사항과 그 순서를 적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 여러가지 사항이 그 자세한 점까지도 일일이 기입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골자만 갖추어져 있으면 될 뿐더러 그 취지가 같은 안건은 한데 묶어놓아도 된다. 그리고 의결로써 일정의 변경·추가할 수 있다.

2. 회의의 진행 순서

전형적인 의사(회의)의 진행순서

1. 개회
 - 정족수 확인
 - 개회(개회) 선언
2. 의사록(회의록) 통과
3. 특별 일정
4. 회장(의장)의 통고
5. 서기·회계의 보고
 - 서기의 보고
 - 회계 보고
6. 위원회 보고
 - 상임위원회의 보고
 - 특별위원회의 보고
7. 전회의 회의에서 심의 미료된 의사
8. 새로운 의사
9. 폐회

3. 새로운 의사

미결 사항이 처리되고 나면 드디어 새로운 의사에 들어간다. 그 때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발언권을 얻는다.
2. 동의를 제안한다.
3. 동의를 재청한다.
4. 의장이 그 동의를 선포한다.
5. 토론한다. 「질문·토론·수정 등」
6. 표결에 붙인다.
7. 의장이 표결의 결과를 발표한다.

(1) 발언권

발언을 하려면 회의원은 누구나 거수 또는 기립을 하여서 「의장!」하고 불러, 그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의장은 그 회의원을 지명하여 발언권을 준다. 「○○○씨 말씀하십시오」 따위로 말해서 발언하기를 허가하는 것이다. 이때 회의원은 자기의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하고나서 발언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남이 발언하고 있는 중에 선채로 있거나, 남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일어서거나, 주의를 끌려고 의장석에 접근하거나 하는 사람은 발언권을 얻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의사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2) 동의를 제안과 재청

발언권을 얻은 회의원은 동의를 제출하고 「즉, 동의를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말하고」 자리에 앉는다. 동이가 제출되었으면 의장은 회원들을 향하여 이에 대한 재청 유무를 묻는다. 즉, 「방금 ○○○씨께서 「...을 이리이러하게 하자」는 동의를 제출하셨는데 이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하는 식으로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 동의를 의제로 삼을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재청이요!」라고 소리만 지르면 된다. 「의장이 재청 유무를 묻기 전에 「재청이요!」하는 회원이 있을 때 의장은 재청 유무는 물을 것도 없이 동의를 선포하면 된다.」 웬만한 회의에서는, 재청을 하는 사람은 발언권을 얻을 필요도, 또 기립할 필요도 없으며, 위에 말한 식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재청」이란 것은, 동의를 제안한 사람 이외에 적어도 한사람은 그 동의에 관심을 가졌거나 또는 지지하는 사람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회의의 능률상으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만일 한 사람도 재청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 동의는 「의제」로서 상정되지 않고 버려지며 의사는 다음 것으로 옮겨진다. 몇명 정도가 재청해야 의제로서 채택(상정)되느냐 하면, 그것이 특히 회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외엔, 제안자 이외의 한 사람만으로 된다. 또 예외로서 전혀 재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동의도 있다.

(3) 동의를 선포

그 동의에 재청이 있으며 의장은 곧 「재청이 있었으므로, ○○○씨가 제출한, 「...을 이리이러하게 하자」는 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라고 선포한다. 또는 서기에게 그 기록된 동의 내용을 낭독하도록 지시한다. 「기록 서기」는 이 동의

를 틀림없이 기록하고, 제안자의 성명도 부기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동의는 「기본이 되는」 동의이므로, 「원동의」 또는 「주동의」라 일컫는다.

(4) 토론

「동의」가 의제로 상정되었으면 먼저 의장은 그 제안자에게 「제안 이유의 설명」을 요구한다. 보통 제안자가 설명을 마치고 나면 의장은 그 설명에 대한 질문을 회의원들에게 시키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찬부의 토론을 시키며,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표결에 붙인다. 이렇듯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토론」을 진행시키면, 혼란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능률도 오른다.

1) 제안 이유의 설명 : 의제가 선포되면 먼저 의장의 지시로 제안자는 그 동의(의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한다. 이 때 제안자는 자기가 어째서 이 동의를 제출했느냐 하는 「목적」과, 「이점」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야 한다.

2) 질문 : 이어서 의장은 「이에 대하여 무슨 질문은 없습니까?」하는 식으로 전원을 향하여 질문할 것을 요구한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반대의견 따위를 말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 단계에서는 정말로 잘 모르겠는 점에 대한 질문만을 해야 할 것이다.

3) 토론 : 의장이 「이제 더 질문이 없습니까?」라고 물어서 그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의장은 「그럼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선포한다. 규모가 작은 웬만한 회의에서는 보통 찬성이든 반대이든 그 어느쪽부터 먼저 발언해도 괜찮게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찬성 의견을 먼저 요구하는 편이 능률적이다. 제안자가 빠뜨린 더군다나 좋은 점이 남아 있을 경우에, 그것이 찬성 의견에 의하여 보충되므로 그 안의 좋은 점이 한결 뚜렷하게 되기 때문이다. 단, 규모가 큰 회의의 경우, 의사 규칙에 반대 의견부터 먼저 발언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의장은 「찬성자→반대자→찬성자…」의 순서로 교호로 발언시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또 이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찬성자도 반대자도 서로 상대방의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나를 알아내어서 논의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와 같이 찬부 양론이 토론되어 가는 동안에 여러가지 「보조 동의」라든가 「임시 동의」, 「특권에 관한 동의」 등이 나온곤 해서 회의는 점점 복잡하게 되어간다. 이 경우 장내가 혼란해지는 일이 없어 원활히 의사를 진행시키려면 논의(토의)를 규칙대로 행한다는 것과, 동의의 순서를 올바르게 지킨다는, 이 두 가지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

가 있다.

4) 수정안 : 그 원동의에 대체로 찬성은 하지만, 그러나 내용을 좀 수정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을 때엔, 「수정 동의」를 낼 수 있다. 만일 이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으면 즉시로 질문·토론에 들어간다.

5) 재수정안 : 이것은 「수정 동의」를 더욱 수정하고 싶다는 경우에 내는 동의이다. 그러나 이 「재수정안」에 대한 수정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표결하는 데 있어서는, 「재수정안→수정안→원안」이란 순서로 체결해야 되며, 재수정안·수정안이 다부결된 경우에 있어서만 마지막으로 원안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다.

6) 토론종결 : 의견이 대체로 다 나왔을 즈음에 토론을 종결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이 「토론의 종결」은, 의장이 먼저 「대체로 의견이 다 나온 것 같으니,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라고 하여도 좋으며, 또 회의원 가운데서 누가 「토론 종결」의 동의를 내어도 괜찮다. 이 경우,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거기서 토론은 종결되며, 토론의 종결이 가결되고 나면 이어서 곧 토론된 의안의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의안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의장은, 최후의 발언자로서, 동의의 제안자에게 「절론적인 발언」을 시키는 것이 좋다. 이로써 제안자는 토론된 바를 정리하여 그동안에 나왔던 모든 「반대의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할 수가 있는 것이다.

(5) 표결·표결 결과의 발표

제안자의 최종 발언이 끝나면, 의장은 「그럼 지금부터 「…을 이러이러하게 하자」는 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하는 식으로 말하고 나서, 드디어 표결에 들어간다. 서기로부터 찬부의 각 인수를 보고 받으면, 의장은 기립해서 그 표결 결과를 발표한다. 이 때엔 찬성표수를 먼저 발표하고, 반대표수를 나중에 발표하는데, 반드시 양편표수를 다 발표해야 한다. 이어서, 「따라서 ○○○씨가 제출한 「…을 이러이러하게하자」는 의안은 의결「또는 부결」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한다. 이로써 회의는 한 매듭이 지어지고, 다음 의제로 진행되는 것이다.

9. 폐회

이리하여 의사 일정을 종료하였을 때, 또는 예정된 폐회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의장은 폐회를 선언할 수 있다. 「폐회 시간이 되더라도, 회의원 가운데서 회의 시간을 연장하자는 동의를 나오거나, 의장이 그에 대하여 회의원에게 외논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회의원 가운데서 누가 폐회의 동의를 내는 것이 보통이다. 만일, 다음 번 회의의 일시·장소를 정해두고 싶을 때엔, 회의원은 「다음 번 회의의 일시 및 장소의 결정」을 「동의」로서 제출한다. 이 동의는 다른 일체의 동의에 우선할 뿐더러 정족수가 되지 않아도 결의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다음 번 회의는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서 행하느냐를 정할 수 있다.

모의지방의회활동 프로그램

지방의회의 구성 : 공정한 선거
지방의회의 운영 : 개회식과 원구성
지방행정에 관한 질의답변
지방의회활동 평가

지방의회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나 여러가지 다양한 규정들, 그리고 지방자치나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등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깊게해준다는 데에는 의미가 있으나 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몸으로 체험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지방의회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이다. 선거로부터 시작해서 의원으로 당선되고 원구성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지방의회의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작업들이 하나의 활동 프로그램으로 제시될때 그래서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활동을 몸으로 체득할때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다. 제 2부에서는 1부에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해서 활동을 직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의 구성 : 공정한 선거

합동 유세 2차



개 요

선거는 민주정치의 기본이요 그 출발점이다.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민주정치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이 되는 선거가 바르고 깨끗하게 치루어져야 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개막과 함께 우리 모두는 선거 일상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선거는 우리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민주시민의식이 절실하다. 이 모듈에서는 지방자치 실시의 첫출발점이 되는 선거에 대한 여러가지 절차와 과정을 제시하였다. 선거절차와 방법의 기준을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임원을 뽑을 때를 기준으로 제시했으며 지방의원 선거도 커다란 원칙에 있어서 대동소이하다.

목 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선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거나 선거문화에 대한 식견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 모듈을 통하여 선거에 대한 절차와 선거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활동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9명이나 7명으로 구성한다. 학교위원회는 9인 학급위원회는 반장과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 구성방법 : 국민학교나 중학교 수준에서는 각 학교의 최상급 학년의 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위원장선출 :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 위원공고 : 선거일 공고일에 다음쪽의 〈양식 1〉의 방식으로 밝힌다.
- 임기 : 선거관리기간 동안
- 의결정족수 :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공고 제 ○○ 호

위원공고

19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 (인)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부 서	주 소	비 고
6-1	김막동	1979. 5. 10			

양식 1 선거관리위원 공고양식

활동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

공고사항

- 선거일 공고일에 학교위원회 위원명단 공개
- 후보자 등록상황을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공고
- 당선인 공고

명부작성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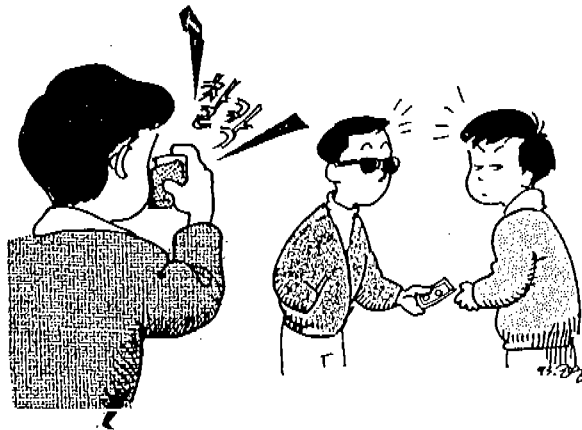
- 학급위원회가 작성한 투표자 명부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보자 등록

- 후보자 등록처리
 -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처리
 - 추천자의 중복여부 및 추천자수 확인
 - 투·개표 참관인 및 선거운동원 명단 확인
 - 선전벽보 접수 및 내용검토
- 후보자의 번호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후 후보자의 추첨으로 결정

선거운동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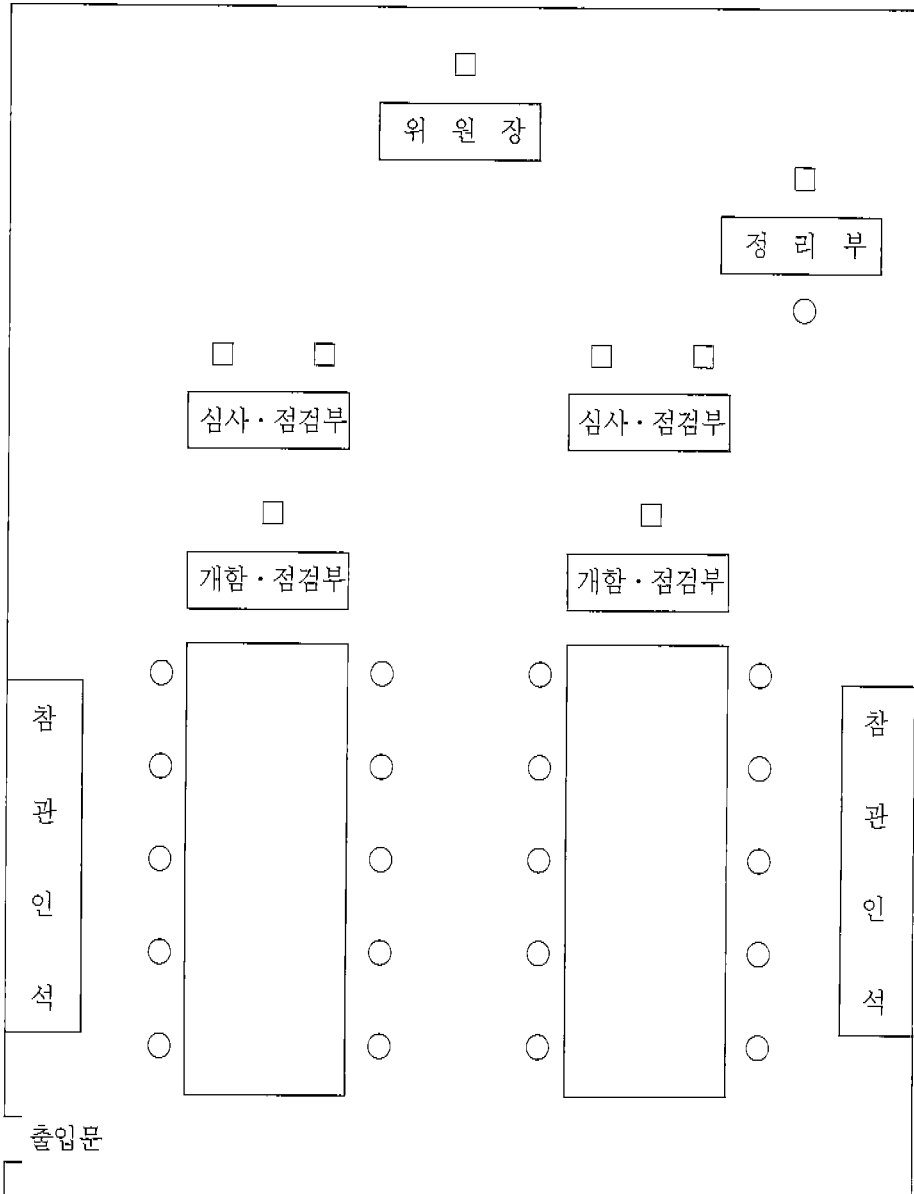
- 선거운동원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발급(비고란에 일련번호 기재)
- 벽보는 게시판에 보는 사람쪽에서 왼쪽으로 기호순으로 붙임
- 합동소견발표회준비 : 소견발표회 진행예문에 의거준비



양식 2

개 표 장 설 비 도

□ 위원석 ○ 종사원석



투표용지작성

- 선거일 전일까지 학교와 협의하여 작성

개표관리

- 개표장소설비 : 선거일 전일까지, (양식 2) 개표장 설비도 참고
할 것
- 개표진행 개표장소설비 : 투표가 끝날 때까지
 개표사무종사원 및 개표참관인 출석여부 확인
 개표결과 발표 및 당선인 결정
- 학교장에게 명단제출

활동 3 선거일 공고

- 공고자 : 학교장
- 공고방법 : 게시판에 공고. 〈양식 3〉의 방식으로 공고

선거일 공고

19 년도 모의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일정과 입후보 자격요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 년 월 일
위원장(학교장) 인

1. 선거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후보자등록			
합동소견발표회			
선거운동기간			
투표일			
개표일			

2. 후보자등록시 제출서류

-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 나. 추천장 1부

3. 입후보 자격요건

- 가. 19 년 월 일 현재 본교에 3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 나. 전학기 성적이 3.5 이상 (또는 직전학기 학년석차 30%이내)
- 다. 유급한 사실이 없고 유기정학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학생
- 라. 선거권자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추천을 받은 학생

양식 3 선거일 공고양식

활동 4 선거방법

- 1인 1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회장, 부회장 선출
- 회장은 최다득표자를, 부회장은 차순위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부회장을 별도로 선출하는 경우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권 : 3학년 이상 재학생
-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 : 회장 (6학년에 재학중인 어린이)
부회장(5학년 및 6학년에 재학중인 어린이)

활동 5 투표자 명부작성

- 작성권자 : 학급위원회 위원장
- 작성기간 : 선거공고일 다음날까지
- 작성부수 : 2부
- 작성방법 : 학년, 반별로 번호, 성명을 기재하여 작성하되 출석부를 사용할 수 있음. <양식 4>를 참조할 것

투표자 명부서식

제 학년 반

번 호	성 명	투표용지수령인	번 호	성 명	투표용지수령인

양식 4 투표자 명부서식

활동 6 후보자

- 등록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1부. 〈양식 5〉 참조
추천장 1부. 〈양식 6〉 참조
- 등록신청기간 : 선거일 공고일로 부터 2일이내
- 신청자 : 후보자 본인
- 접수장소 : 학교위원회
- 후보자 등록공고 :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
- 후보자 회의개최 : 후보자 등록마감일에 개최
 - 후보자기호추첨
 - 선거절차(선거운동포함) 및 벌칙규정안내
- 후보자 사퇴 : 사퇴신고서는 본인이 학교위원회에 직접제출
- 후보자 등록무효 및 사퇴공고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학년 반 성 적	제 학년 반 번 학년 1 학기	생 년 월 일 학년 2 학기	확 인 자
	평균(학년석차)	평균(학년석차)	교 무 주 임 (인)
정계사실여부			확 인 자
			학생주임 (인)

본인은 19 년 월 일 실시하는 19 년도(제 학기) 학생회 (회장) (부회장)
에 입후보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9 년 월 일
위 본인 (인)

덧붙임 : 추천장 1부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양식 5 후보자 등록신청서

추 천 장

○ 추천후보자

가. 성 명 :

나. 학년·반 : 제 학년 반

위의 사람을 19 년 월 일 실시하는 19 년도 (제 학기)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번호	학년·반	성 명	서 명	번호	학년·반	성 명	서 명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양식 6 추천장

활동 7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까지
- 선거운동원
 - 인원 : 후보자마다 3학년이상 학년별로 2명씩
 - 신고방법 : 학교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 선거운동방법 :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원 명찰을 달고함
- 선전벽보
 - 제출기간 :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까지
 - 제출매수 : 4매
 - 규격 : 길이 38cm, 너비 53cm(4절 규격)
 - 내용 : 사진을 붙일 수 있음
타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은 게재할 수 없음
 - 첨부 : 게시판 및 복도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좌에서 우로
- 합동소견발표회
 - 회수 : 선거기간중 1회
 - 발표시간 : 후보자 마다 5분 이내
 - 발표순위 : 후보자의 추천에 의하여 결정
 - 연설내용 : 타후보를 헐 뜯거나 거짓말은 할 수 없음

— 준비사항 —

- | | |
|------------------------|------------|
| • 마이크 : 2개(연설자용, 사회자용) | • 연설대 : 1개 |
| • 좌석 : 위원 및 후보자수 | • 시 계 : 1개 |
| • 종 : 1개 | • 추천알 : 1개 |
| • 표찰 : 위원장, 위원, 후보자 | • 기타필기도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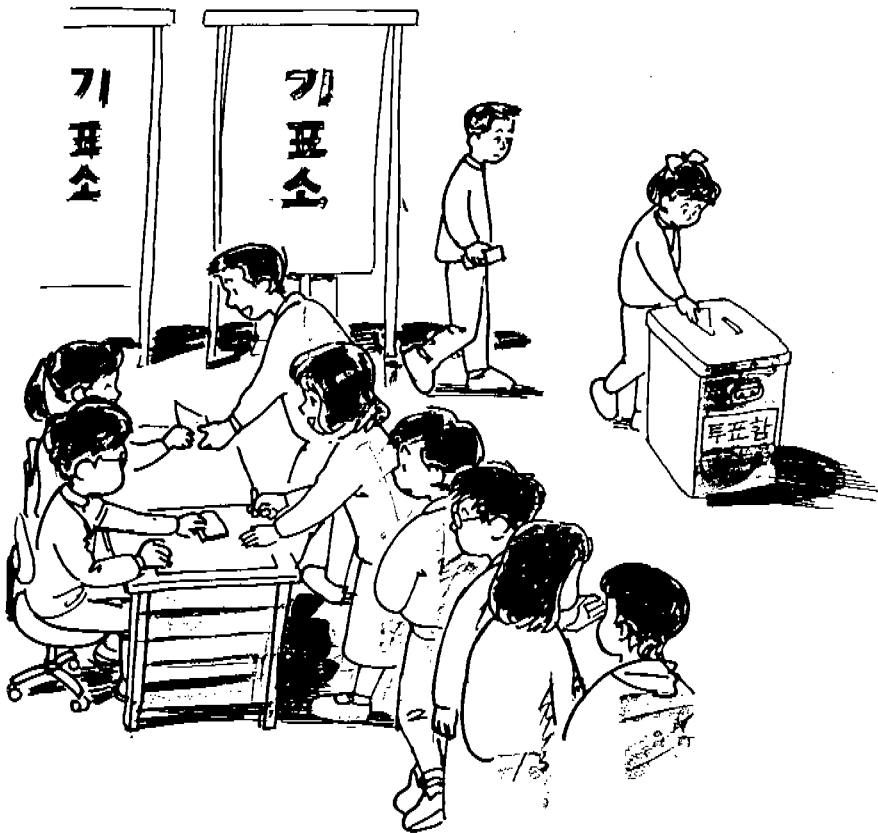
- 개인소견발표회
 - 횟수 : 3학년이상 학급별로 실시
 - 개최자 :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
 - 방법 :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을 순회하며 실시

○ 선거비용

- 선거관리비용은 학교에서 지출
- 선전벽보 작성비용등 선거운동비용은 후보자가 부담

○ 투표용지작성

- 작성권자 : 학교위원회
- 투표용지인쇄
- 인쇄방법 : 회장과 부회장선거를 별도 실시하는 경우
투표용지는 각각 색상을 구분하여 작성
- 보관방법 : 교무실에 보관
- 수 량 : 선거권자 수 만큼



활동 8 투표

- 투표방법
 -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선택한 후보자란에 “○”를 함
 - 학년별 반별로 투표시간 지정 실시
 - 지정시간에 투표하지 못한 선거권자는 맨마지막에 투표 실시
- 투표소설비
 - 설비일자 : 투표시작전까지
 - 설치권자 : 학급위원회
 - 설치장소 : 각 학급 또는 학교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 투표사무조직원 : 학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담당
- 투표참관인
 - 인 원 : 각 투표소 마다 1인씩
 - 신 고 자 : 후보자
 - 신고방법 : 선거일 전일까지 학교위원회에 신고
 - 임 무 : 투표용지교부상황 및 투표상황을 참관
- 투표진행
 - 투표개시시각 : 학교에서 정하는 시간
 - 투표진행시는 학급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
 - 투표참관인 참석
 - 위원장 투표개시 선언 및 투표 실시
- 투표의 마감 : 투표록 작성

활동 9 개표

- 개표시간 : 투표종료후
- 개표장소
 - 결정공고 : 선거일 전일까지
 - 장소설비 : 투표가 끝나기 30분 전까지
- 개표사무종사원
 - 인원 : 학급위원회 위원이 됨
 - 담당부서 : 개함점검부, 심사검산부, 정리부, 위원장
- 개표참관인선정
 - 인원 : 후보자마다 1명씩
 - 신고자 : 후보자
 - 신고시기 : 선거일 전일까지
 - 임무 : 개표진행상황참관
- 개표개시 및 진행
 - 선거관리위원회위원 : 과반수 참석
 - 참관인참석
 - 개표개시 선언 및 개표실시
- 개표결과 발표
- 선거록 작성



활동 10 당선인공고

- 공고시기 : 당선자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한 후 공고
- 공고자 : 학교위원회
- 공고문 : 〈양식 7〉 참조

당선인 공고

19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 있어 다음의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19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 (인)

당선인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비 고
		(세)		

양식 7 당선인 공고양식

활동 11 지방의원 선거의 기본정신

- 지금까지 국민학교를 예시로 해서 선거과정과 절차를 설명했지만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선거를 치루는 기본원칙은 같다.
- 선거과정의 기본은 주요선거관리과정에 후보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분야를 확대하고 선거운동의 제한, 금지규정의 위반자에 대한 규제규정을 포함한다.
- 지방의회 선거법에 의해 규정되는 지방의원의 선거는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위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청소년이나 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의 정신과 절차를 체득해서 적극적인 민주주의의 참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활동 12 선거의 기본원리

- 선거란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국민 주권사상과 기본권사상이 그 바탕이 된다.
- 선거권은 국민이 갖는 기본권의 하나인 참정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리인 까닭에 여기에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의 5원칙이 적용된다.
- 보통선거란 제한선거와 구별되는 선거제도로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은 물론, 인종, 신앙, 성별, 교육수준 등과는 관계없이 국민으로서 일정한 연령에 달한 사람이면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 평등선거는 차등선거에 반대되는 제도로서 1인 1표의 원칙아래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는 제도이다.
- 직접선거란 간접선거와 대칭되는 선거제도이며 일반 선거인이 대표자를 직접 선거하는 제도이다.
- 비밀선거는 공개선거와 상반되는 선거제도이며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알 수 없도록 그 비밀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 자유선거는 강제선거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선거인이 어떠한 강제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활동 13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역사

- 최초의 지방선거(제 1회 지방선거) : 1952년 4월 25일에 시읍면 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고 5월 10일에는 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됨.
- 두번째 선거 : 1956년 8월 5일(시읍면 의회 의원선거)
1956년 8월 13일(시도의회 의원선거)
- 세번째 선거 : 1960년 12월 12일(시도의회 의원선거)
1960년 12월 19일(시읍면 의회 의원선거)
- 네번째 선거 : 1991년 3월 26일(시군구 의회 의원선거)
1991년 6월 20일(시도 의회 의원선거)

특별칸 : 지방의회활동에 도움되는 단체

지방의회에서는 여러가지 지역현안을 다루게 되는데 각 분야별 자료와 정보의 출처를 알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의정활동에서 다루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들과 관련된 기관들을 소개하여 청소년들이 모의 지방의회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환경/공해 관련단체

경북대학교 환경과학연구소

주소 : (702-701)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

전화 : (053) 957-5799 FAX : (053) 957-5799

지역사회의 환경정화활동을 한다. 그리고 외부의 의뢰를 받아 환경문제의 대책을 연구하고 대규모의 환경과 관련되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환경영향평가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사업으로는 환경관련 세미나와 환경문제 관련인들에 대한 교육과 외국인사 초빙 세미나 등을 행하고 있다.

공해추방운동연합

주소 : (110-490) 서울시 종로구 충신동 100 보덕약품 빌딩 4층

전화 : 743-8840 FAX : 756-614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 가는 환경보호운동단체, 교육·선전사업과 지역간·환경단체간의 연대사업을 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봄과 가을에 실시하고 있고 특히 여성위원회를 두어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환경문제에 관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주소 : (609-735)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전화 : (051) 510-1874

환경보존, 공해문제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하며 환경영향평가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연구보’(연간)

자연의 친구들

주소 : (110-300)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23 크라운빌딩 301호

전화 : 722-5407 FAX : 722-5407

주로 생태계를 연구·조사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홍보활동을 통해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환경보호활동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자원재생공장

주소 : (150-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쌍마빌딩 5층

전화 : 780-4611 FAX : 780-4611

재활용 쓰레기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처리하고 있다. 전국에 10개의 지사와 81개의 사업소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일반사업체에서 수지가 맞지않아 수거하지 않는 농촌의 폐비닐 등을 처리하는 공장을 2개 가지고 있다.

‘자원재생’(월간)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주소 : (152-055) 서울시 구로구 구로 5동 41-15 환경빌딩 2층

전화 : 862-2591 FAX : 867-8479

전국의 환경관리인(배출시설 관리 또는 환경기사라고도 함)들의 정보교환과 권익옹호를 위한 모임으로 14개 지역협의회(제주도 제외)를 가지고 있다. 활동은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며 환경보호차원의 캠페인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환경관리인’(월간)

충남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주소 : (305-764)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전화 : (042) 821-6127

환경보존과 공해문제의 전반을 연구하며 환경영향평가사업을 하고 있다.

‘환경연구보고’(월간)

한국수도협회

주소 : (135-260)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45-10 병준빌딩 3층

전화 : 578-2367 FAX : 578-2368

상·하수도에 관련된 회사와 공무원들의 모인 단체, 상·하수도에 관련된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수도’(격월간)

한국자연보존협회

주소 : (130-120)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207

전화 : 963-3160 FAX : 963-3160

1963년에 설립되어 자연자원의 조사·연구, 자연보존을 위한 홍보·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자연보존’(계간)

한국환경기술연구소

주소 : (150-070)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990-80 태안빌딩 305호

전화 : 844-4794 FAX : 844-4388

환경영향평가사업, 실내작업장 환경측정 등의 활동과 외부의 환경관련 용역 의뢰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환경과학연구소

주소 : (133-791)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전화 : 290-1506 FAX : 293-9230

1978년 개설. 환경오염과 그 재해를 학문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폐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경계획을 연구하며 각종 산업체로부터의 연구의뢰를 받고 환경조성의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과학논문집’(연간)

환경과 공해연구회

주소 : (151-016) 서울시 관악구 봉천 6동 33-3 협동빌딩 303호

전화 : 871-0581 FAX : 871-0581

환경보호운동단체. 환경학교를 열고 홍보활동과 강의를 통해 전반적인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을 한다.

‘환경과 공해’(계간)

환경관리공단

주소 :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24-4 강원빌딩

전화 : 563-7225 FAX : 563-0054

국가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장 등)을 관리한다.

중소기업체의 환경기초관리시설 설치자금을 융자해주는 등의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환경관리’(계간)

환경보존협의회

주소 : (100-094)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 12층

전화 : 753-7669 FAX : 756-6141

환경보존에 관한 대국민 홍보·교육사업과 기술개발, 연구·조사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환경오염 방지기구 전시회 개최, 환경마크 개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보존’(월간)

소비자 관련단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

주소 : (110-06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603호

전화 : 739-5441 FAX : 736-5514

소비자를 위한 상담과 조사·연구 정보제공을 주로 한다.

‘시민의 모임’(격월간)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주소 : (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20-427

전화 : 793-8081 FAX : 793-8082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10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로서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은 하지 않고 이모임에 소속된 각 단체로부터의 자료요청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소비자’(월간)

소비자협동조합중앙

주소 : (121-250)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53-16

전화 : 335-3261 FAX : 338-2387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 유기농법에 의한 안전한 먹거리로 건강과 생명을 보호받고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캠페인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을 하고자 한다.

‘생활과 협동’(비정기)

YWCA 고발센터

주소 : (100-021) 서울시 중구 명동 1가 1-1

전화 : 779-1075 FAX : 774-8984

모든 소비생활에서 일어나는 소비자의 불이익 등을 중재하고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한국공익문제연구원

주소 :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58 대학성빌딩 5층

전화 : 766-5141 FAX : 765-9360

경제기획원 산하기관으로 소비자상담과 소비자문제를 연구한다.

한국부인회

주소 :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91

전화 : 701-7321 FAX : 701-7323

1963년 설립. 65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보호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소비자호보’(격월간), ‘한국부인회소식’(회원용)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소 :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91

전화 : 796-8111 FAX : 796-5907

정부지정기관. 소비자의 불만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활동 등 소비자와 관련
된 여러가지 연구·조사활동을 한다.

‘소비자시대’(월간)

한국소비자생활교육원

주소 : (150-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2 고려빌딩 607호

전화 : 783-8575 FAX : 784-3777

소비자 피해고발을 접수하고 교육활동도 하고 있다. 여러가지 상품의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주소 :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91

전화 : 796-8111 FAX : 796-5907

정부지정기관. 소비자의 불만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활동 등 소비자와 관련
된 여러가지 연구·조사활동을 한다.

‘소비자시대’(월간)

한국소비자생활교육원

주소 : (150-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2 고려빌딩 607호

전화 : 783-8575 FAX : 784-3777

소비자 피해고발을 접수하고 교육활동도 하고 있다. 여러가지 상품의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주소 : (140-210)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72-1

전화 : 795-1042 FAX : 798-6564

소비자의 고발을 접수, 처리하고 소비자에 대한 교육활동을 주로 한다.

한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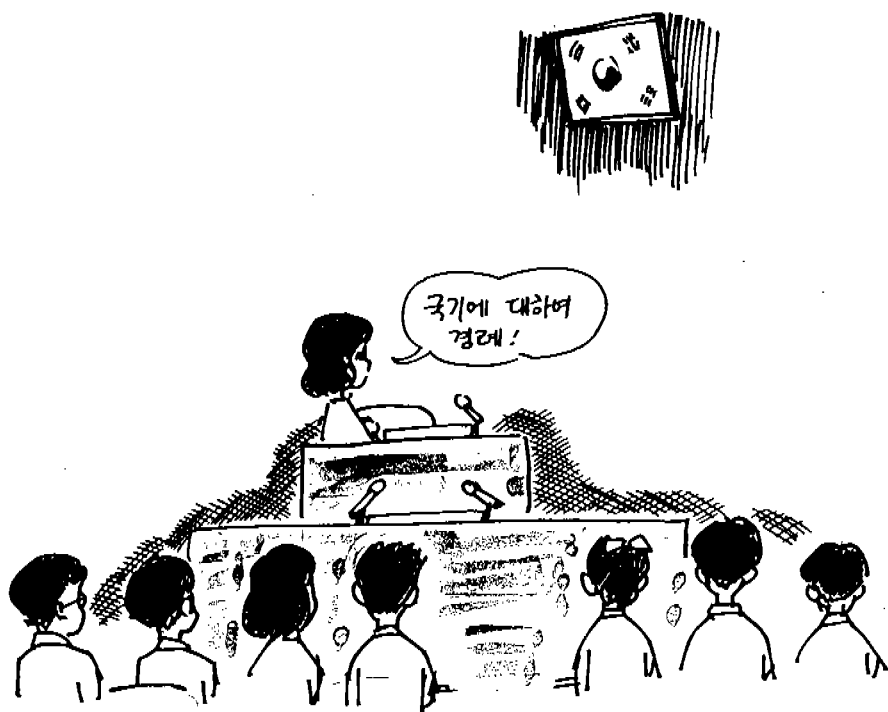
주소 : (135-230)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45-9

전화 : 574-0772 FAX : 578-5716

농산물직거래에 관련된 활동을 한다. 그외에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한다.

‘한살림’(월간 : 한살림조합원용)

지방의회의 운영 : 개회식과 원구성



개 요 이 모듈에서는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지방의회가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보여주는 지방의회의 개원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다루게 될 것이다. 개회식과 폐회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나 사무적으로 준비되어야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본다.

목 표 개원의 배경과 개원의 절차에 의거해서 실제로 개원의 사례를 직접 따라해 봄으로써 원구성과 지방의회활동을 직접 체험해 본다.

활동 1 지방의회운동을 위한 필수고려사항

- 지방의회의원은 ‘어떤일(what)’을 해야 하는가? 즉, 의정활동의 영역과 범위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 ☞ 의회의 권한, 책임, 의무를 숙지해야함
- 의원이 의회에서 해야할 일들을 ‘어떻게(how)’ 해야 하는가? 즉, 의정활동의 절차와 방법을 알고 이를 직접 시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 ☞ 회의진행법, 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숙지해야함
- 의정활동을 ‘왜(why)’ 그렇게 해야 하는가? 즉, 의정활동의 근거와 이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관련된 역사와 제법규 숙지필요

활동 2 지방의회 운영에 관련되는 몇가지 변수

인적·물적 변수

- 1) 의원의 임기개시(선거, 당선, 등록)/ 원구성(의장, 부의장, 위원장, 위원 등의 선출)
- 2) 의회공무원(사무처장,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전문위원, 사무직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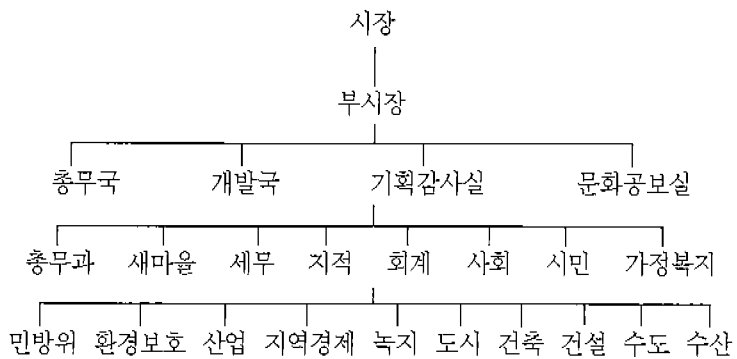
-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 4) 방청허가 및 출입인사 통제
- 5) 회의자료점검, 회의용품준비

구조적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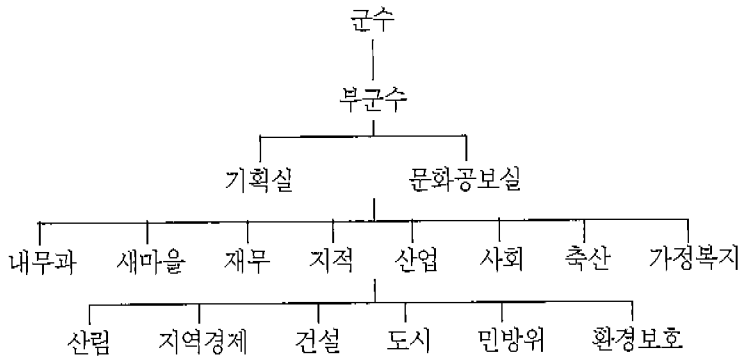
- 1) 의회운영, 조직, 예산 등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 확정
- 2) 의사진행순서 및 의안심의절차의 근거법령, 관행과 선례존중
- 3) 사무처·사무국·사무과 설치, 사무분장, 회의장 관리, 회의록 작성 및 보존방법 개발
- 4) 기타 의정활동(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문, 진정서처리 등)의 제도화

환경적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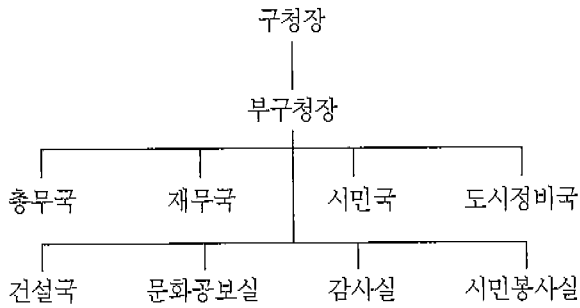
- 1) 지방주민과의 관계 : 여론수렴 및 관리, 민원사항 등
- 2)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행정수요 파악, 협조, 행정지도 등
- 3) 국회 및 정부와의 관계 : 상위법령, 국가예산, 타행정기관사무 등
- 4) 언론과의 관계 : 회의공개, 취재보도, 등록사항 등



시행정기구조직(진해시의 경우)



군행정기구조직(승주군의 경우)



구행정기구조직(서초구의 경우)

활동 3 의원등록

- 의원등록은 의원당선자의 당선사실을 의회사무기구의 의원명부에 등재하여 의원임을 확인하는 절차
- 이 때 제출된 등록서류는 의원임기중의 의원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의회의 보존문서로 활용·관리된다.



활동 4 집회소집

-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개원임시회는 의회가 자율적으로 집회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회소집을 하고, 집회에 필요한 제반조치 및 지원을 하게된다.
- 집회소집시기 및 공고 : 선거일로 부터 2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 공고는 시·도의회는 7일전, 시·군·구의회는 5일전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집회를 공고한다.

제○회 ○○○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회
 ○○○도 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일시 : 19××년 ×월 ×일 (×요일) ×시
 장소 : ○○의회의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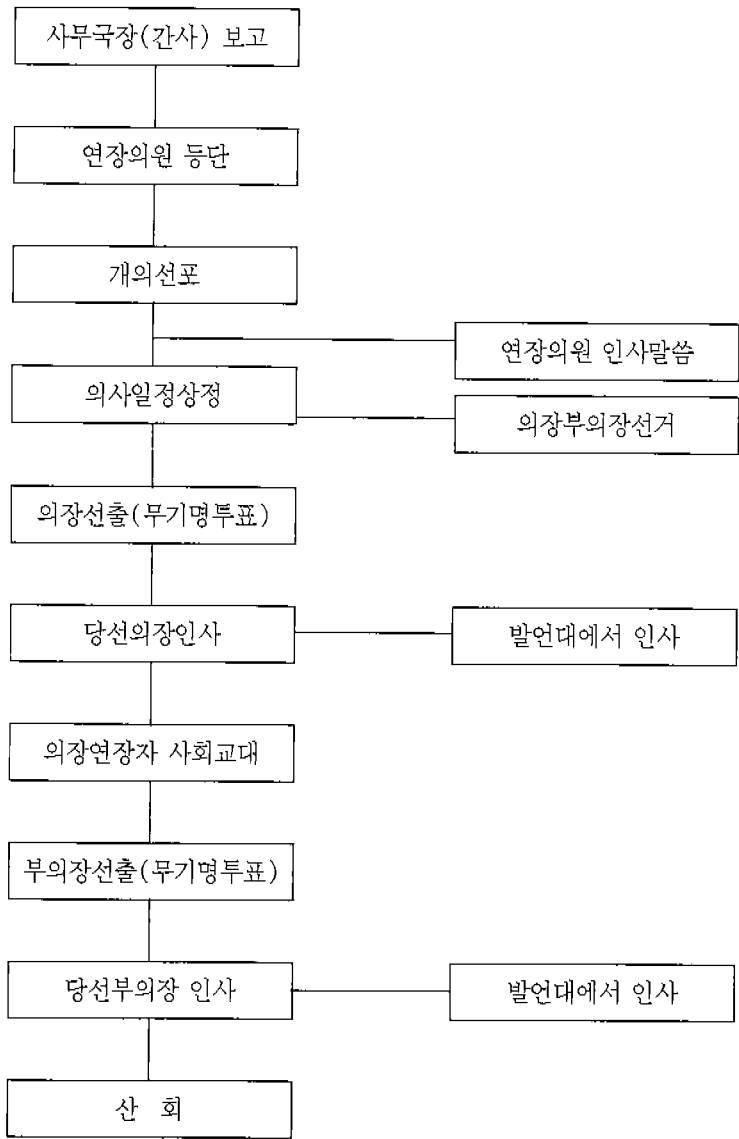
19○○년 ○월 ○일
 ○○○ 도지사(시장) ○ ○ ○

집회공고문안

- 집회안내 및 장소 :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공고하며, 집회공고와는 별도로 집회일시가 결정되면 의원당선거 개별적으로 집회안내문 발송한다.
- 집회장소는 신성하고 엄숙한 회의를 준비해야 하고 회의용품이나 회의자료를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 의석은 의장이 선출되기 전이므로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배정, 의석에 의원의 명패를 부착해야 한다.

활동 5 원구성

제1차 본회의(원구성) 진행과정 개요



-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중요한 의전행사인 개원식을 주관할 의장단 선출을 먼저 해야 하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는 원구성을 하게된다.
- 집회보고 :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의 동원축하인사와 당선 및 등록사항·집회경위·정족수에 관한 보고를 한다.
- 의장직무대행인 연장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의장선거의 안내를 실시한다.
- 개의선포 및 의사일정상정 : 의장직무대행은
‘제 ○회 ○○시(도) (군·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한다.
의장직무대행은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한다.
- 대의제도의 원리와 무기명비밀투표, 표결선거 후 발언불가 규정에 의하여 후보추천이나 정견 발표없이 바로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실제로는 다수의석에서 사전내정이 있을 수 있다.
- 의장·부의장 선거실시 : 의장직무대행에 의해 약간명의 감표위원 지명, 투표방법 설명 및 의원호명→투표실시→개표결과선포(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투표, 결선투표실시)→당선선포(의장에 당선된 의원은 발언대에서 의장직을 수락하고 당선인사를 한 후, 사회를 교대한다. 부의장의 선거는 당선의장의 사회로 의장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선출한다. 부의장에 당선된 의원은 발언대에서 부의장직 수락, 당선인사를 한다.

활동 6 개원식 실습

[제 ○○ 회 ○○시(도) (군·구)의회 임시회 개회식]

-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하게 되므로 회기의 장단에 관계없이 매일 회의마다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며 총선후 최초의 임시회 개회식을 일명 ‘개원식(開院式)’이라고 한다.
- 일시 및 장소 : 최초집회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또는 정회중에 지

방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함.

- 진행순서 : 개식→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 제창→순국선열 및 전몰호국 용사에 대한 묵념→의원선서→개회사(의장)→축사(지방자치단체의 장)→폐식.
- 의원선서를 하여야 주민앞에 의원으로서의 체모를 갖추는 것이 되므로 의원은 개원식에 참석하여 선서할 의무가 있으며, 의장의 선창에 따라 한구절씩 선서하게 된다.
- 초청인사 : 관련행정기관의 장, 각계인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초청

활동 7 회기결정

- 의회가 활동능력을 가지고 안전심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회기라고 하며, 의회에 일정기간만 활동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법정회기 : 임시회의 회기는 10일 이내에 한다. 총선거후 최초의 집회를 의미하는 개원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다는 점이 중요하고, 원구성 및 의정활동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될 것이다.
- 결정방법 : 집회후 즉시 의결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1차 본회의에서 정하여야 하나 개원임시회는 보통 제2차 본회의에서 회기를 결정한다.
-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회기를 결정할 경우에는 각 정당 또는 의원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의장의 제안 형식으로 의결한다.
- 의사일정작성 : 의사일정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당일의 회의 진행예정서이다. 회기가 결정되면 의사일정이 작성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회기를 협의할 때 의사일정도 잠정 작성된다.
-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회기표시방법 : 정기회나 임시회의 구별없이 회기마다 순차로 ‘제 ○○회 ○○○시 (도) (군·구) 의회 (임시회 또는 정기회)’로 표시한다.

활동 8 상임위구성

-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 의회를 제외한 지방의회는 국회와 같이 ‘상임위중심주의’에 의하여 운영될 것이므로 상임위구성까지 이루어지면 총선거후 최초의 집회가 성공적으로 개원되는 것이다.
- 상임위원선임 :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실제로는 의장이 각 정당대표와 협의하여 의석비율에 따라 사전 조정후 본회의에 상정한다.
- 상임위원장 선출 :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연기명식 무기명비밀투표로 각 상임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게 되나 각 정당 또는 의원간 사전 협의를 필요하다.
- 선임시기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출은 가급적 제2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도록 사전협의를 필요하다.
- 상임위 의석배정 : 위원장석 우측부터 다수의석 정당소속 위원을 가나다 순으로 의석을 배정한다.
- 제1차 상임위원회 개의 : 집회 3일경 활동을 예상한다. 위원장 인사, 위원소개, 직원소개, 간사선임, 소관별 현황보고 및 시책질의 등을 한다.

활동 9 의사일정과 안건의 상정

19 년 월 일 (요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의장 · 부의장선거

부의된 안건

1. 보고

2. 의장 · 부의장선거

3. 의장당선인사

4. 의장 · 부의장선거(계속)

5. 부의장당선인사

활동 10 보고양식 및 사례

(10시)

- 의사계장 홍길동 : 홍길동입니다.
- 곧 제1회 ○○○○시(도) (시·군·구) 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먼저 일지매 간사로 부터 임시회집회에 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간사 일지매 : ○○(시·군·구)의회 간사 일지매입니다.
 -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1회 ○○(시·군·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년 ×월 ×일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어서 우리 ○○(시·군·구)에서 ○○명의 의원님이 당선되었으며 그 전원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제1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출석하신 의원중 최고연장자이신 최연장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하게 되었음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연장 : 안녕하십니까?

- 마천동에서 당선된 최연장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제1회 ○○○(시·군·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로 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연장자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고장의 임시의회를 개최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의장직무대행의 역할을 맡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의장선거를 위한 짧은 시간이지만 사회진행에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활동 11 의장·부의장선거

(10시 4분)

○ 의장직무대행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 의장·부의장 선거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의원, 박○○의원, 이○○의원, 노○○의원 이상 네분이 수고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4명 배치)

○ 의장직무대행 : 각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셨습니다.

- 그러면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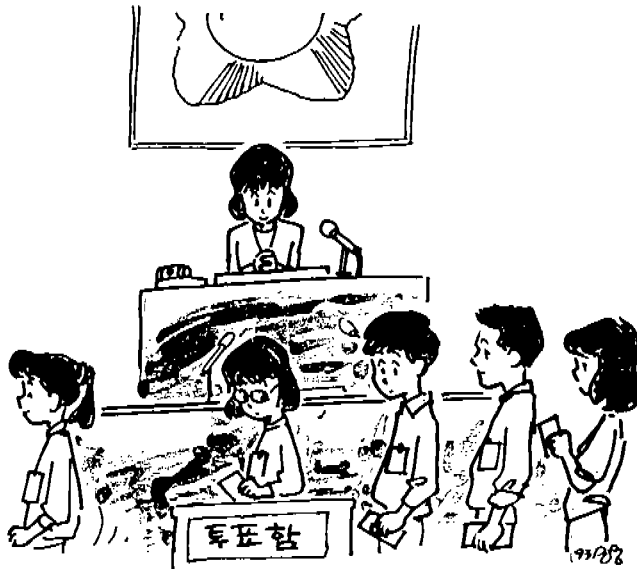
○ 의사계장 홍길동 : 의사계장 홍길동입니다.

-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장석을 향하여 양쪽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님께서서는 오른쪽 직원석에서 직원으로 부터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 의장직무대행 : 그러면 투표가 다 끝났습니까?

-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감표 위원님께서서는 한번 더 나오셔서 개표하는 것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부터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개함 및 명패수 점검)

○ 의장직무대행 :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7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

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 의장직무대행 :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명패수 27매와 똑같이 27매입니다.
-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 의장직무대행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7표 중에서 김최다 15표, 한두룡 10표, 상원수 2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최다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활동 12 의장 당선인사

(10시 23분)

- 의장직무대행 최연장 : 김최다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축하드리며 지금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최다 :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먼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막상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라는 막중한 책임감에 두려움마저 듭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개회식에서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만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의장직무대행 최연장 :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동안의 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전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활동 13 부의장선거

(10시 25분)

- 의장 김최다 : 그동안 사회를 맡아주신 최연장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홍길동 : 의장선거때와 같이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 방법은 의장선거 때와 같습니다. 그럼 호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경청을 생략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투표실시)

(명패함개함 및 명패수점검)

(투표함개함 및 투표수점검)

(계표)

(당선자 선포)

활동 14 부의장 당선인사

(11시 16분)

- 의장 김최다 :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분은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당선자 : 존경하는 의회 의원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미약한 저를 이곳 의회 초대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 상호간에 친목과 이곳의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나아가서 이곳의 제반사항을 여기 계신 의원님과 의논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끊임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의장 김최다 : 부의장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27인) : 출석의원 전원의 이름을 기록한다.
김최다 외 26인

활동 15 개회식 준비

순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4. 개회사
5. 구청장인사
6. 폐식

(사회 : 의사계장 ○○○)

(10시 02분 개식)

- 의사계장 ○○○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회 서울특별시 ○○구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활동 16 의장개회사

- 의장 ○○○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구간부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정기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도의 미비와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 시작해야 하는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의회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하나하나씩 기초를 다지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역 현안이 있을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큰흐름 속에서 해결함으로써 구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민곁에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자세로 지역봉사와 의회활동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정기회에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92년의 실적과 93년의 계획을 보고받고 91년 결산과 93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앞에 놓여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달간 의회와 집행부는 보다 진지한 자세로 새해 계

획과 예산을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 심의 결정하여 재정 투자 효율을 극대화시켜 구민에게 질 좋은 생활 편익과 복지가 보다 많이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되도록 다같이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다소간의 다른 견해라도 소홀하지 않게 수렴 반영하는 진통을 거둬주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와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급격한 변화가 계속되는 국제사회속에 우리 모두는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된 본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기회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활동 17 시장·군수·구청장(자치단체장) 인사



- 의사제장 ○○○ :이어서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구청장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금년 한해를 뒤돌아 보며 신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93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의 우리 구정은 40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계획했던 일마다 차질없이 마무리되어 각 분야에 걸쳐 크고 작은 성과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크게 높혀 구정발전을 위한 결정적인 도약의 계기를 이끌어낸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전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 열심히 일하는 창의적인 행정수행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위상에 발맞추어 우리 구정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이룩한 구정신뢰와 이해를 더욱 정진시켜 새해에는 친근한 구정, 가까운 시정을 구현하는 생활 행정에 역점을 두어 깨끗하고 솔선 실천하는 구정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구정목표인 더불어 함께사는 지역사회 건설에 더욱 매진하기 위하여 구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불편없고 여유있는 생활환경 조성과 함께 서로 돕고 예의바른 건전한 지역사회 기풍을 더욱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내년도 우리구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구민의 욕구는 날로 증대하고 있으나 세입면에 있어 경제안정화 시책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 부터 전시적이며 소모적인 경비는 배제하고 엄격한 투자심사에 의한 사업을 선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 ○○○억 ○○○○여만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의원 여러

분께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무쪼록 40만 구민의 대표자이신 의원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우리 다함께 손을 맞잡고 보다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 : 이상으로 제16회 서울특별시 00구의회 정기회 개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폐회)

특별칸 : 지방의회활동에 도움되는 단체

농업 관련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소 :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91 국제빌딩 5층

전화 : 795-8201 FAX : 798-7513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개선에 관계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유통’(월간), ‘농산물유통조사 월보’(월간)

농어촌사회연구소

주소 : (151-060) 서울시 관악구 봉천 10동 41-538

전화 : 885-1607 FAX : 883-8144

농어촌에 관계된 학술심포지움과 교육활동을 주로 한다.

‘농민과 사회’(계간)

농촌경제연구원

주소 : (130-050)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산 4-102

전화 : 962-7312 FAX : 965-6950

농어촌경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정책을 수립한다.

‘농촌경제’(계간), ‘Journal of Rural Development’(반년간)

농협중앙회

주소 : (100-151)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5

전화 : 737-0021 FAX : 736-8491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신용사업, 농산물유통, 가공·판매 사업 등 농민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업을 하고 있다.

‘두레’(월간), ‘농협연감’(연간), ‘느티나무’(계간), ‘조사월보’(월간)

전국농민총연맹

주소 : (135-282) 서울시 강남구 대치 2동 994-12 안순빌딩 302호

전화 : 563-3007 FAX : 557-9849

농업정책과 관련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각종 농산물 가격책정에 대한 시정요구, 농산물 판매활동 등을 하고 있다.

‘전국농민신문’(월간), ‘농민통신’(월간), ‘전농’(계간)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

주소 : (138-160)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600 동화청과 3-98

전화 : 400-9626 FAX : 400-9528

농수산물 이벤트사업을 하며 목동에 직판매장을 가지고 있다.

카톨릭농민회

주소 : (300-182) 대전시 동구 성남 2동 1-170

전화 : (042) 632-7968 FAX : (042) 624-9697

땅과 자연과 사람을 살리자는 운동인 ‘생명공동체운동’과 생태계를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유기농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농민교육과 약물치료를 통하지 않고 미리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자는 ‘생활건강운동’을 벌이고 있다.

‘생명공동체’(격월간 : 회원용)

한국기독교농민회

주소 : (110-470) 서울시 종로구 연지도 136-46 기독교회관 606호

전화 : 762-7893

농촌의 교회를 중심으로 농민운동을 하는 단체. 농촌교회와 도시교회,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기농산물 직거래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체운동을 통해서 이농현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곳에 공동노동을 제공한다.

‘기농’(월간), ‘농민세상’(계간)

산림조합중앙회

주소 : (138-180)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11-5

전화 : 416-9416 FAX : 416-7381

임업과 관련된 정부대행사업과 임업기술지도를 주로 하고 있다.

정보 관련단체

통신개발연구원

주소 :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5

전화 : 558-3008 FAX : 558-5832

체신부의 정책연구활동을 한다.

‘정보사회연구’(계간)

한국물가정보센터

주소 : (100-170) 서울시 중구 무교동 1 효령빌딩

전화 : 774-7200 FAX : 756-0792

물가조사용역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종합물가정보’(월간), ‘적산정보’(연간)

한국정보과학회

주소 : (137-063) 서울시 서초구 방배 3동 984-1

전화 : 588-9246 FAX : 521-1352

전자계산학회, 첨단과학기술분야의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 응용기술의 발표 등을 통하여 표준 및 규칙의 제정과 활발한 학술교류를 하고 있다.

‘정보과학회지’(격월간), ‘정보과학논문집’(반역간)

한국정보관리협회

주소 : (150-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 맨하탄빌딩 1203호

전화 : 780-9794

각 기업체간의 경영정보, 자료 등을 제공하고 세미나 및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주소 : (150-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화 : 780-0101 FAX : 782-1266

컴퓨터 관련단체. 대정부 건의활동, 조사작업, 홍보활동 등을 한다. 세미나와 외국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정보산업’(월간)

사회복지관련단체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주소 :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27-5

전화 : 719-6415 FAX : 719-6416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사·연구, 정책건의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정책연구’(연간)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주소 :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27-5

전화 : 702-6662 FAX : 701-7568

부랑인복지시설을 회원으로 하고, 그 시설에 수용된 부랑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주소 :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27-5

전화 : 573-8939 FAX : 577-1420

각 지역의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복지를 도모하는 지역사회복지관들의 연합회. 정책건의와 지역사회 복지관 간의 자료와 정보제공, 복지관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권익증진도모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소 :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27-5

전화 : 712-1655 FAX : 719-5643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여 각종 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켜 사회복지의 증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사·연구, 교육훈련, 간행물 발간, 계몽·홍보, 정책건의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 국제교류, 사회봉사 안내소의 설치·운영 등 사회복지전반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총 5백 79개의 법인·단체, 2백 33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회원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각 지방별 협의회를 두고 있다.

‘사회복지신문’(주간) 등 다수.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주소 :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27-5

전화 : 713-3362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주소 : (670-084) 부산시 동래구 연산4동 578-3

전화 : (051)861-0311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

주소 : (704-400)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273 월성종합사회복지관내

전화 : (053)634-7122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주소 : (402-010) 인천시 남구 송의동 137

전화 : (032) 883-1776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주소 : (502-260) 광주시 서구 쌍촌동 1229 쌍촌종합사회복지관 2층

전화 : (062) 371-5741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주소 : (302-222) 대전시 서구 삼천동 둔산지구 13-1 둔산사회복지관내

전화 : (042) 482-2878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주소 : (440-19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262 우만종합사회복지관내

전화 : (0331) 42-9280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주소 : (200-092)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10-14

전화 : (0361) 53-1127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주소 : (360-030) 충청북도 청주시 문화동 108-6

전화 : (0431) 55-8710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주소 : (301-011) 대전시 중구 대흥 1동 129-1

전화 : (042) 257-0854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주소 : (560-020) 전라북도 전주시 경원동 2가 61-1

전화 : (0652) 86-0070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주소 : (501-022)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7-1

전화 : (062) 232-5380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

주소 : (700-010)대구시 중구 포정동 75-4 사회복지회관 201호

전화 : (053)424-6655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

주소 : (631-052)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상남 2동 32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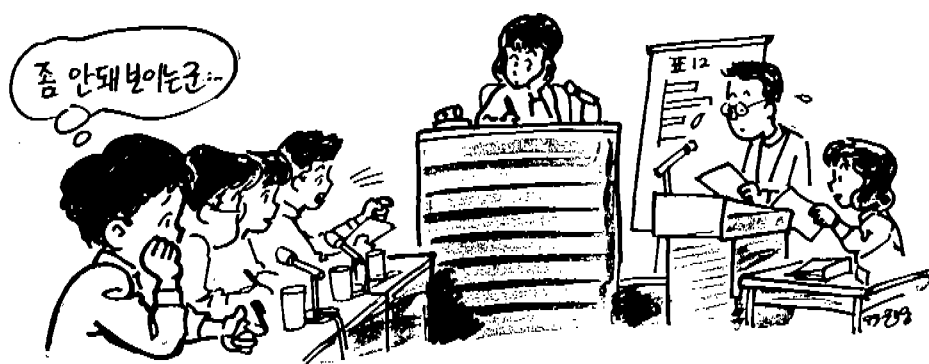
전화 : (0551)42-4613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주소 : (690-032) 제주시 삼도 2동 1238-8

전화 : (064) 53-3781

지방해정에 관한 질의답변



개 요 이 모듈에서는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활동 가운데 전형적이고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방의원의 질의와 지방공무원의 답변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실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지방의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자신들이 스스로 역할 놀이를 해 보는 것이다.

목 표 질문과 답변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이론적 지식을 배양한다. 지방의회활동에서 가장 전형적인 구두질문을 의원들이 직접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서 질문의 요령과 방법을 습득한다.

활동 1 질문과 질의

- 질의 : 의제로 된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을 묻는 행위, 단지 의제가 된 안건의 심의절차상의 한 과정
- 질문 :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적과 계획, 그리고 의문나는 사항을 묻는 행위, 하나의 독립된 의사일정사항으로 취급됨
- 질문의 종류
 - └ 구두질문
 - └ 서면질문
 - └ 일반질문
 - └ 긴급질문

활동 2 구두질문과 서면질문

- 구두질문
 -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전제됨
 -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1/5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요구에 의하여 그 의결로서,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

질문요지서 제출서식

199 . . .

수신 : 의장

제목 : 질문요지서

년 월 일 ○○시의회의 의결로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시의회 회의규칙 제 73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요지서를 제출합니다.

1. 질문연월일 : 년 월 일
2. 질문대상자 :
3. 소요시간 :
4. 질문요지 : 별첨

제출자 ○ ○ ○ 인

질문요지서

성명		소속	
질문대상자		소요시간	

-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여 질문을 행하게 된다.

○ 서면질문

- 의장을 통해 한다.
- 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고, 자치단체의 장이 질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한다.

활동 3 의사일정 순서짜기

○ 議事日程 (제x차 본회의) 事例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93회제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93년구정업무보고의 건
7. 휴회의 건

활동 4 회기결정하기와 의안처리하기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외)

- 의장 ○○○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 부터 12월 24일 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외)

- 의장 ○○○ :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위원은 지역선거구순에 따라 ○○○의원, ○○○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원외 8인 발의)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 외 6인발의)
6. 93구청업무보고의 건
7. 휴회의 건(의장제의)
 - 부의장 ○○○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11월 30일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니까?
(「없읍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차 본회의를 11월 30일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활동 5 구(시·군)정 질문 : 지방행정에 대한 의원의 질문

질문준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10시 3분 개의)
- 의장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

므로 제16회 ○○○○시 ○○구의회 정기회 2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 의장 ○○○ :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질문사례 1

- ○○○의원 : 어려운 환경속에서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40구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각국·실·과장, 그리고 모든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의회의 구정질의를 경청하기 위하여 방청석을 꽉 메워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본의원이 제 1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의를 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방청석 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방의회 구성이후 많은 우려와 염려 속에서 숱한 문제점을 접하면서 아직도 기대수준에 못미치는 아쉬움 속에서 미흡한 제도와 운영, 부족한 여건과 풍토 속에서 개선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어려운 분위기와 일천한 기간을 고려한다면 대체적으로 성공작이라고 평가합니다.
- 지방자치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면서 국가 정책의 지역적 실험이기도 합니다. 자치행정은 인간과 자연, 현세대와 차세대간 지금의 주민들의 공생과 공존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보전적이고 자원절약적인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건설과 복지수준 제고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구정시책은 물론 주민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에 있어서도 환경보존과 오염방지는 물론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노력이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환경문제와 관련되는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시민국장께서는 가정의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집에서 부터 상가, 시장,

백화점의 과대포장 추방과 소비조장 안하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1회용품 안쓰기와 음식물 남기지 말기, 사무실에서 에너지 절약과 종이 덜 쓰고 아끼기, 세차장·카센타 등에서 폐유와 폐수배출을 안하고 대형업소의 대기오염방지 지도단속 등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추진계획과 실질적인 감독의 위치에서 평소의 철학이나 공직관을 곁들여서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 수질, 토양 오염방지, 환경보전, 공해단속 등은 귀가 아르게 들어온 단어들이며 그 지도단속권이 지난 7월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된 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떠도는 말을 유언비어로 받아 넘기기에는 너무나 석연치 않다는 말입니다. 공해방지 내지 지도단속을 위해 측정장비, 단속장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했는데 '91년 대비 '92년 6월말 기준 지도단속실적을 제시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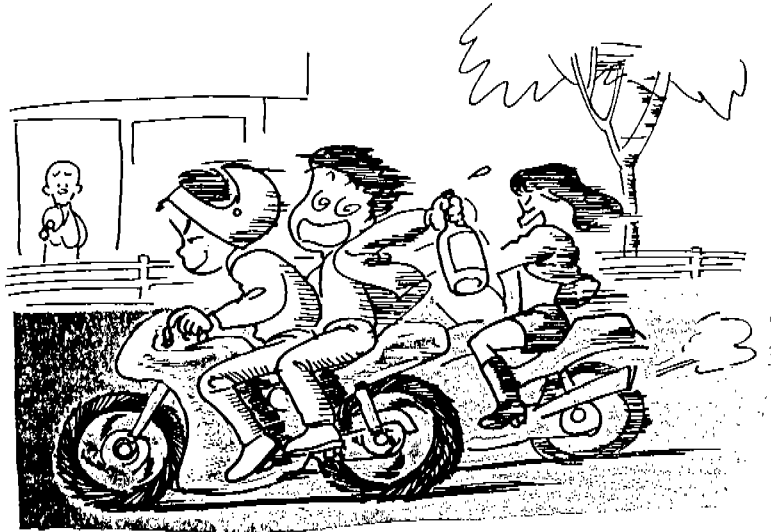
- 다음으로 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가정, 사회, 학교가 잘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이지만 우리 구만이라도 앞장서서 관내의 좋은 시설을 이용하여 합창제, 미술제, 체육 및 취미교실 등 청소년의 여가선용과 만남의 장, 발표의 장, 친교의 장이 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구청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하는데 지금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어울마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93년도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다음으로 생활체육과와 공원녹지과 소관을 일괄해서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물은 만물의 근원으로 인류는 원시시대부터 물이 있는 강을 중심으로 취락을 형성해서 문화가 발달해 왔으며 지금도 좋은 물을 찾기 위한 연구와 탐색을 계속하고 있음에서 물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내 야산 등산로와 유원지 등에서 우리에게 젖줄 구실을 하던 약수터 336개소중 98개소가 오염되어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평소 약수터의 샘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동안 구청장 명의의 수질검사 표지판을 믿고 이용하던 많은 주민들은 불신과 원성을 시장보다는 구청장에게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더 가깝게는 구청장이 웅달샘, 약수터까지 하나하나 직접 챙겨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을 보필하는 관계관은 그것이 공원녹지과 소관이든 생활체육과 소관이든 평소에 이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가졌다면 최소한 이러한 불명예와 행정불신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사료되는데 그 유지관리체계와 지도점점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주민들의 이용이 점점 많아지고 대화와 친교의 장이 이 웅달샘 주변에서 형성됨을 생각할 때 약수터의 청결 등 수준높은 관리와 수질보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이제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 이상의 질문은 구체적으로 지적한 부분도 있고 문제제기만 한 것도 있으나 실무행정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므로 분야별로 소상한 답변이 불성실내지 불충분하여 재삼 촉구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박수 받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하여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원의 질문사례 2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물어가는 '92년도를 아쉬워하며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평소 청소년 지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직원 여러분 또 일선 동 현장에서 청소년 보호 지도를 위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룩해 오신 업적은 내일의 지역사회를 보다 밝게 하는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 우리는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풍부한 지식



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는 예절과 협동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갖고 인류공영에 기여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 그러나 오늘날 급속히 진행되는 고도산업화 과정에서 개방과 자율의 물결에 편승하여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건전하지 못한 사회 현상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요인이 되고 또한 청소년들의 비행을 조장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보람있는 삶을 설계해

나가며 스스로의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고 덕성과 체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설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 우리 구의 행사를 보면 청소년에 대한 문화행사는 많지만 그때 뿐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요망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구의 종합복지관내 청소년직업훈련소가 있는가, 있다면 운영에 대한 계획서 제출을 요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요구자료에 의하면 설치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정이란 사항에 따라 변화가 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 복지회관 3층에는 청소년직업훈련소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업이 시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통령령 제 13538호 지방양여금법의 1991. 12. 21 법률 제 4443호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지속적인 도움이 간절히 요구되오니 계속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빈 여러분께서는 이 나라 미래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바치는 정열과 땀이 큰 결실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내외빈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의 질문사례 3

- 안녕하세요. ○○○의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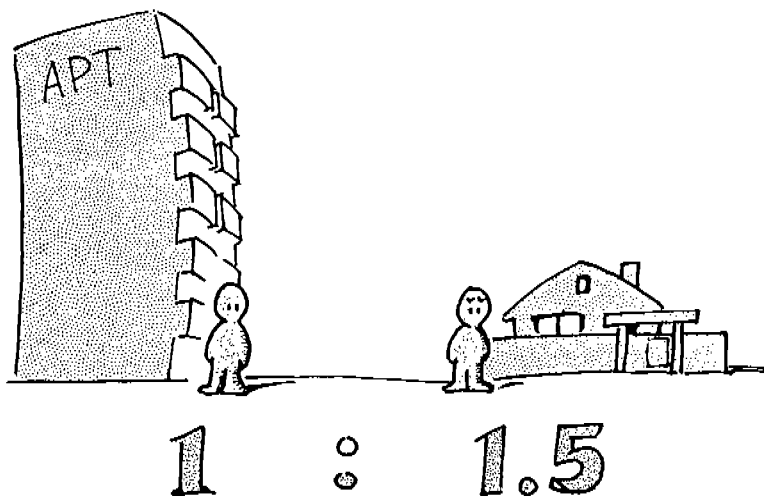
시민생활의 불편함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불편없고 여유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며 경제안정화 시책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전시적이며 소모적 경비를 배제하고 질 높은 주민 복지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 첫째, 상하수도 이하 각종 매설 시설물에 대한 도면이 없다고 하는데 담당국이나 담당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또 교체 및 신설시 예산의 낭비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는데 건

설국장의 견해는?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굴착허가시 도면을 첨부하여 허가되는지의 여부, 도면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는지, 도면을 첨부하였다면 그 도면이 담당국에 보관되어 차후 굴착허가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가고 있는지?

- 둘째, 동별 생보자 자매결연을 맺어 5만원씩 보조함은 매우 고무적이고 장려할만한 사업이나 자율적으로 되어야지 구청장 방침에 의해 지시되어 매년초 각 동장들이 고통스럽게 구걸하다시피 애쓰는 안타까운 심정을 구청장은 알고 계신지? 본의원이 알기에는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되지 않는 썩지 않는 쓰레기, 소량이라 하더라도 분리수거 대책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셋째,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에서 어려운 경기극복에 앞장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 믿습니다. 그래서 소모적이고 선심적인 경정사업비의 과감한 취소와 삭감으로 모든 행사를 축소 운영할 의지는 없는지?
- 넷째, 토초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투기 억제법에 의해 재산상의 평가는 같아도 단독주택 소유자는 APT소유자에 비해 재산세 및 의료보험료를 1.5배 이상 더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국장은 과세형평에 어긋남이 없다고 보는가?



- 다섯째, 예산결산 심의시 본의원이 느낀 것은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구의회에 사전 연락을 하여 관심있는 의원들로 하여금 현장답사를 할 기회를 줄 수는 없는지? 예산심의 및 감시, 견제, 감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에 통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국장의 견해는?
-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정보화 시대에 신속하기 위해 기업식의 행정, 기업인다운 관료로서 정직한 책임행정이 터전을 잡을 때 구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받을 대화합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만큼 관료의 책임이 지대하오니 소신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활동 6 답변의 준비

안건의 상정

- 날짜 1992년 12월 7일(월) 10시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2.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2. 휴회의 건(의장제외)

개의원언

(10시 개의)

- 의장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시 ○○구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활동 7 자치단체장의 답변

- 의장 ○○○ : 의사일정 제 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 3차 본회의시 실시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 : 존경하는 ○○○ 의장님, 그리고 구민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연일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덕분에 이제 우리구는 모든 면에서 최상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구청장을 위시한 전직원은 이러한 구 위상에 대해서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수준높은 자치구로서의 높은 위상을 계속적으로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와 구청은 앞으로도 더욱 공고한 유대를 가지고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맡은 바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연이은 구정에 대한 질의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하신데 대해서 앞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 정기회의 구정질의에 관한 구청장의 출석 답변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언제라도 격의없이 답변을 드릴 각오이며 또한 주요한 현안문제가 있을 때마다 의원 간담회 등을 이용해서 수시로 협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그 분야를 가장 잘 아는 국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대신 답변드리는 것이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모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활동 8 관계공무원의 답변

○ 의장 ○○○

구청장으로부터 실질적이고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관계관계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입니다.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수고하시는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라는 바쁜 일정으로 부득이 제가 대신하여 답변하게 된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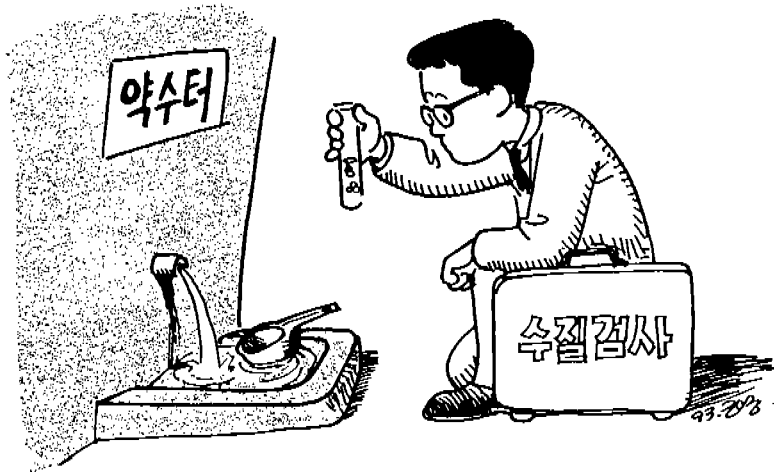
먼저 ○○○의원의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18개소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PH 등 20개 항목의 이화학검사를 하며 보건소에서는 대장균 등 8개 항목의 미생물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수터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회, 보건소에서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보건소에서는 4개소가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취수중지 안내판을 게시하고 소독실시 후 재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

○ 의장 ○○○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 의사진행발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관계국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첫번째 답변으로서 총무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있어 앞으로의 의사진행에 혹시나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구정에 대해 질문을 냈을 때에는 그 질문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서 여러가지의 자료를 검토해서 종합해 본 결과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부분이 의원들로 하여금 이해를 해달라 하는 그런 뜻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거꾸로 의원들의 질문을 관계국장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를 확실히 이해한 다음, 답변을 해야지 이런저런 형식을 갖추기 위한 그런 답변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은

이 구민을 대표하고 있고 구민이 곧 구의 주인입니다. 위의 주인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결국 이번의 구정질문인데 그 질문을 확실히 이해를 한 이후에 과연 질문의 요지에서 어떤 것이 불만이었는가를 정확히 짚어서 말씀을 하셔야지 쪽 나열하듯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의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보다 충실한 답변이 나왔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국장 ○○○

재무국장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평가가 같을 경우에도 단독주택 소유자는 아파트 소유자에 비해서 재산세 및 의료보험료를 1.5배 이상 더 납부하는 것으로 과세형평에 어긋난데 대해서 재무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 142조 제 1항 제 2호에 의거하면 공동주택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구분되는데 전용면적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공유면적은 누진을 적용이 배제되어 단일 세율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은 공유면적이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에 비해서 재산세가 다소 적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기도 하겠습니까마는 구청으로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없이 시정이 불가한 상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의회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국장 ○○○

시민국장 ○○○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는 환경보전과 관련된 공해문제, 청소년문제 등을 폭넓게 지적하시면서 각 분야별 추진계획과 실적, 추진책임자인 시민국장으로서 평소 철학과 공직관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수집의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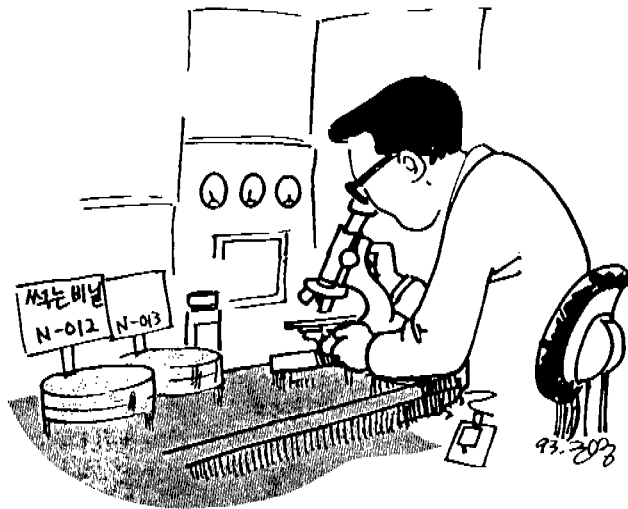
우선 쓰레기 분리수거의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91년초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해오던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을 완전 정착시키고자 '91년 12월부터 우선 아파트 지역부터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설치하였으며 '92년 7월 1일부터는 일반주택 지역에도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92년 12월 현재 우리 구 재활용품 보관용기 설치 현황은 아파트 지역의 77개 단지에 435세트, 일반주택 지역은 15개동에 1,080세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아파트 지역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1,328톤 수거에 매각대금이 47,868,000원이고 일반주택지역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11월 25일까지는 771톤 수거에 매각대금이 29,143,000원입니다. 재활용품 매각대금 관리 및 보관용기 관리 등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된 각 아파트 단지 및 일반주택지역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92년 12월중에는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추진조직을 강화하겠으며, 각동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동을 시상함으로써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의원은 김포 매립지에 반입되지 않는 비닐, 스티로폴 등 썩지 않는 쓰레기의 분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닐, 스티로폴 등 썩지 않는 쓰레기 처리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당면 현안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특정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별도로 분리수거하지 않고 일반 폐기물과 함께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산업체에서 썩는 비닐을 연구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므로 머지않아 저렴한 가격으로 확대 보급이 되면 이 문제는 다소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9 의원의 보충질문

○ 부의장 ×××

관계국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요지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 부의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신청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지역선거구순에 의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 부의장 ×××

○○○의원께서 발언하신 자료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제 6차 본회의는 월 일 시 개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명단

○ 출석공무원명단

특별칸 : 지방의회활동에 도움되는 단체

아동 관련단체

대한사회복지회

주소 :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전화 : 567-8891 FAX : 552-1019

입양사업을 주로 하며 이외에 불우아동들과 후원자를 연결시켜 주는 활동도 하고 있다.

동방아동복지회

주소 : (128-180)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전화 : 332-3941 FAX : 333-1588

국내·외 입양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평택에 ‘동방어린이동산’이라는 3세 미만의 버려진 아동들을 보호하는 영아원이 있다. ‘동방학교’라는 장애아동 특수학교가 있으며 재활원이 있다. 그리고 미혼모보호시설의 운영, 서대문구 복지회관의 위탁운영, 인인왕유아원 위탁운영, 불우아동후원사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동방어린이’(계간)

서울시립아동상담소

주소 : (156-020)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45-1

전화 : 813-7741

국내입양과 요보호아동의 시설수용, 어린이집, 유치원의 보호자 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연구보고서를 내고 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주소 : (152-055)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41-16

전화 : 838-3296

전국에 있는 80개의 탁아소가 소속되어 있다. 주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탁아소이며 민간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다.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을 운영하며 현재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네 아이들’(계간)

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

주소 :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27-5

전화 : 712-0708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도 등의 활동과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계몽·홍보, 아동복지시설간의 연락협조, 육성사업 등을 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재단

주소 : (100-170) 서울시 중구 무교동 95

전화 : 777-9121 FAX : 756-4256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과 후원자를 연결해주며 미아찾아주기운동 등을 주로 하고 있다.

‘단비’(소적지 격월간)

한국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

주소 :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27-5

전화 : 706-0966 FAX : 704-8163

전국의 놀이방까지를 포함한 어린이집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관리와 정책건의,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사업, 맞벌이부부를 위한 12시간 보육사업 등의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

주소 : (121-220)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전화 : 332-7501

입양기관. 입양사업 외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 불우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활보호금을 지급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홀트소식’(계간)

여성 관련단체

한국부녀복지연합회

주소 :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27-5

전화 : 712-0713

부녀복지사업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락조정. 조사·연구 및 계몽활동, 부녀복지시설의 육성지도와 시범복지시설의 운영 등의 활동을 한다. 또한 국제복지기구와의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주소 : (152-059)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09-54

전화 : 867-0516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을 상담·교육활동을 주로하고 있다.

‘일하는 여성’(격월간)

장애인 관련단체

대한정신박약자애호협회

주소 : (156-012)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2동 400

전화 : 846-9277 FAX : 842-1959

정신지체인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제반사업을 하고 있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주소 : (137-061)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2-6 진인빌딩 2층

전화 : 521-5364 FAX : 584-7701

장애인관련 정책개발 및 입법화 추진사업, 교육·홍보사업, 출판사업, 장애인권익문제상담, 장애문제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시민대학’운영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함께걸음’(월간) 등

한국소아마비협회

주소 : (133-200)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16-3

전화 : 446-1237 FAX : 4-2144

장애인들의 위한 사격장, 수영장 등 여러가지 이용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1백 40여명의 장애인들이 전자부품조립을 하는 ‘정립전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주소 : (139-20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1-50

전화 : 556-3493 FAX : 555-4241

청각장애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반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시각장애복지회

주소 : (134-090)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37

전화 : 427-9111 FAX : 427-2687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용구개발, 재활사업 등을 주로 하고 있다.
‘점자새소식’(격주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주소 : (427-040) 경기도 파천시 별양동 1-12

전화 : 504-3704 FAX : 504-2995

장애인 구직상담, 업체개발, 장애인 교육훈련, 기술지도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하며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장애인고용’(계간)

한국장애자복지시설협회

주소 :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27-5

전화 : 719-3802 FAX : 701-6217

장애인 복지시설들이 회원. 이 회원들을 관리하고 시설들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정책건의를 하며 일반인과 장애인들을 결연시켜 주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주소 : (138-240)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7

전화 : 416-2596 FAX : 412-0463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장애인에 관련된 복지정책 연구·개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재활용품전, 미술대회 개최 등을 통한 문화사업을 하고 있다.

‘곰두리’(계간)

한국장애인부모회

주소 : (120-17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0-25 덕원빌딩 402호

전화 : 312-5417 FAX : 312-5417

장애인의 치료, 교육, 직업, 결혼상담을 하며 장애인의 부모를 위한 교육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사·연구, 홍보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소 : (156-012)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2동 395

전화 : 841-3826 FAX : 848-5707

장애인의 상담·지도사업과 장애인의 취업지도·알선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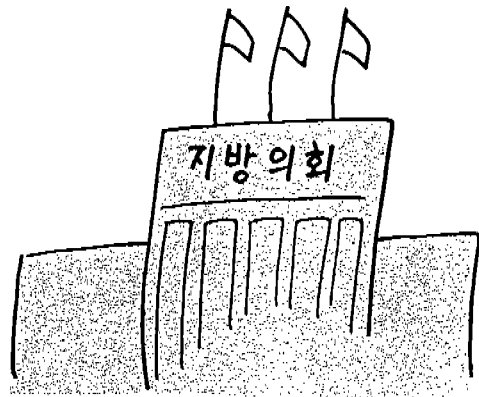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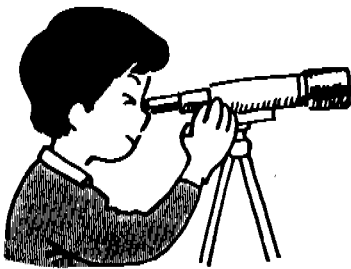
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

주소 :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1-50

전화 : 556-3493 FAX : 555-4241

청각장애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반사업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활동평가



개 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지방의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이나 지방공무원과 같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직접적인 담당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의한 참여와 감시가 필수적이다. 이 모듈에서는 의정감시와 의정모니터에 나선 다양한 단체의 의정발전을 위한 감시활동을 소개하고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이 지방의회활동의 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목 표 지방의회의 올바른 운영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청소년이 지방자치의 감시와 평가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지방의회 감시활동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며 또 실시하기도 어렵지 않은 지방의회 방청의 목표와 구체적인 활동을 알아본다. 방청체크리스트와 방청기를 작성하는 실습도 해본다.

활동 1 목표설정 하기(왜 모니터를 하는가?)



○ 의회활동 모니터를 하는 이유

- 청소년의 지방의정에 대한 관심고조와 참여의 독려
- 참여와 자치로 시민주권 확보
- 제반 제도 개혁의 밑거름
- 정치문화 쇄신에 기여
- 도덕성 회복 및 부정부패의 척결
- 생활의 제반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실 습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감시활동을 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들을 토론해 보자.

특별칸 : 여러 시민단체의 의정모니터 목표

1. 전주 YWCA 의정모니터
 - 지방의회 활동의 지지와 비판기능을 동시에 수행
2. 부천 YMCA 의정지기단
 -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
 - 지역주민의 자치를 실현
 - 시민주체의 정치문화 형성
3. 의정을 지키는 유권자 모임
 - 여성의 정치의식 계발
 - 민주복지사회의 실현
 - 비판, 감시, 정책대안 제시
 -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것
 - 평등한 사회의 실현
 - 건전한 지역문화 창조
4.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 모임
 -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 학습
 - 지역 조사

활동 2 모니터를 위한 활동

○ 활동의 종류

- 1) 의회방청활동
- 2) 시민 토론회 개최 및 참여
- 3) 청원활동
- 4) 의원설문조사
- 5) 보고서 발간이나 소식지 발간
- 6) 지역 민주주의 교실
- 7) 학교주변 유해환경 조사
- 8) 공명선거 캠페인

특별칸 : 주요활동의 방향을 잡기위한 예문

1. 참여활동 : 청소년의 지역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이다. 풀뿌리인 시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수렴하여 시민생활 제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 및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신명나는 정치문화를 형성함에 있다.
2. 지원활동 : 의원 의정활동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활동이다. 시민의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등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어기능을 한다. 또한 오염된 중앙정치로 부터 지역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3. 비판활동 : 비판적 감시활동이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과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비판을 통해 의원, 시민 모두가 깨어있는 정치문화를 형성함에 있다.
4. 홍보활동 : 의정소식에 대한 홍보활동이다. 의정활동의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한다.

실 습

청소년이 효율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활동의 종류나 이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어서 토론해 본다.

- 활동의 제목
- 활동의 내용
- 활동의 목적

활동 3 준비단계



- 일 시 : 199?년 ×월 ×일 오전 11시
- 장 소 : 구교육청 강당
- 참가인원 : 각 학교나 동의 대표로 뽑힌 청소년이나 관심있는 청소년
- 주요내용

- ‘의정감시를 위한 청소년 모임’의 구성을 알리며 경과보고 및 청소년을 포함한 주민참여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장으로 만듦.
- 또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로 환경, 교육, 생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정의 참여자가 될 것을 다짐함.

활동 4 출범에 따른 평가 실시

- 발대식을 포함해서 출범이 잘되었나를 점검함
- 평가의 사례
 - 형식 : 대내외적 홍보가 부족하였고 현수막이나 식장 구색갖추기가 미흡하였으나 짧은 시간의 효율적 사용과 짜임새 있는 진행이 돋보임.
 - 내용 : 청소년들의 지방의정에 대한 막연한 의식을 조금이나마 구체화시켜내고 비른 의정활동을 위한 준비작업의 포문을 여는 장.

실 습

발대식을 마친후 각자는 의정감시활동 출범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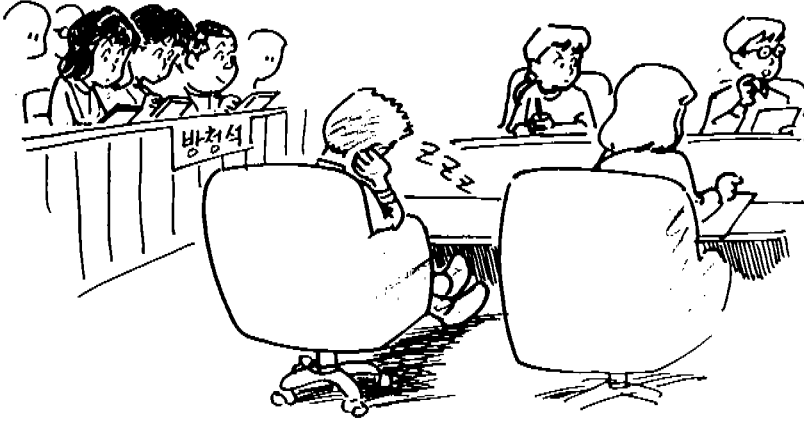
활동 5 지방의회방청의 목적설정

- 조직이 얼마나 원활히 운영되느냐를 점검함
→의회활동의 기본자료를 취득함
- 의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주어서 공부하는 의원상을 만들게 한다

실 습

— 방청을 통해서 지방의회방청활동의 목표를 발견해 보자?

— 어떤 목표들이 추가되어야 하는가?



활동 6 방청활동의 준비

- 의사일정표를 사전에 입수함
(이때 의회 행정사무를 보는 의사국이나 의사계와의 협조가 중요함)
- 시간대별 방청인 명단을 작성함
(3인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함)

활동 7 방청활동시 사용할 체크리스트 작성하기

- 출석자 명단 작성 : 무보수 명예직이라 불출석에 대한 특별한 제제조치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의회기간 중의 출석은 그들의 기본적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참석, 불참석 여부는 성실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 지각자 명단 작성
- 발언요지의 기록 : (20일 후에는 속기록을 받아볼 수 있다.) 의회 방청은 약간의 세과시 및 기록의 공정성 측면에서 3인 이상이 방청하는 게 좋다. 사전에 질의서와 답변서를 입수하여 방청을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 상임위에서는 즉석에서의 질의 답변이 많기 때문에 세심하고 정확한 기록이 요구된다.
- 타의원 발언시 경청태도 : 자신의 발언이 끝났다고 해서 자리를 비운다든지 옆의원과 귀엣말을 주고 받는 의원에 대한 기록 및 사후조치
- 의회진행법 준수여부
 - 발언시간 준수
 - 동의안 제출시 완결성 여부
 - 폭력 사용여부(언어폭력포함)

활동 8 방청체크리스트 작성의 실례

(방청시 주의사항)

1. 의원이나 의회를 감시 감독하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어서는 안된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야 한다.
2. 방청인원이 소수라도 당당하게 임한다.

회의명	○○시 의회 제 ○차 임시회의 제 ○차 본회의				
일시	1992. 7 10(월)	장소	대회의실	기록자	○ ○ ○
불참자 명단	강 ○○ 의원(해외여행), 이 ○○ 의원(사유불명)				
지각자 명단	김 ○○ 의원, 박 ○○ 의원(추후 사유 알아볼 것)				
발언요지	- 질문 이 ○○ 의원 : 김 ○○ 의원 : - 답변 기획국장 : 건설국장 : 보건사회국장 :				
회의분위기 기 타	의원 질의수준이 포괄적인 수준에 그침, 답변도 너무 형식적임 의장이 회의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함. 고의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려는 발언에 대해 제제를 가하지 않음.				
확인란					

활동 9 상임위원회 방청의 요령



- 상임위원회 방청의 일상화
- 본회의는 대부분 상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의안처리의 요식행위인 경우가 많다.
- 본회의에서의 중요사항은 시(구)정질의와 답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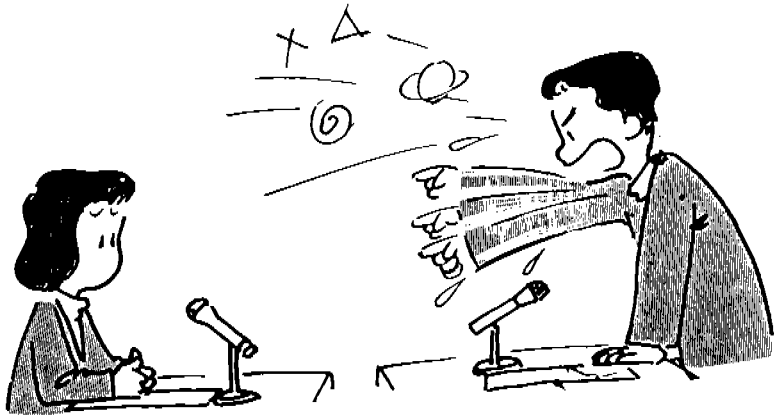


시정질의는 미사여구의 나열인 경우가 많고, 시정답변의 경우 두리뭉실한 답변이 대부분이고 답변내용의 실천여부도 미지수이다.

- 상임위원회는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청소년들이 방청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 비디오 테이프를 분석한다.
- 속기록을 숙독하여 실행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 방청인 발언제도를 제안한다.
- 방청후 평가회를 반드시 조직하고 실시한다.

활동 10 방청기 작성

- 준비사항
 - 상임위원회 방청을 실시함
(왜냐하면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에서 실제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임)
- 미리 자료를 입수한다.
- 공간이 좁기 때문에 사전에 빨리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입장함.
- 방청의 결과를 보고하고 방청기를 작성한다.



우리들 세상지혜, 구의회로 모은다

7월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회의로 구정질의가 없기 때문에 별 재미가 없을 거라는 어느 의원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파악하려는 생각으로 7월 14일 4명의 회원들이 방청을 하였다. 의원들 뒷자리에 방청인들의 자리가 있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을 구청직원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지역신문기자들 그리고 우리모임의 회원 4명이 모두였다. 우리가 앉아있는게 신경쓰이는지 뒤를 흘끔 돌아보거나 어디서 왔느냐고 관심을 나타내는 의원들도 있었다.

몇 의원들이 신상 발언 형식으로 질의를 했고 사안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이 나와서 노력하겠다고, 유감이다 등으로 확실한 시정이나 의지도 없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이었다. 회의 도중에 멀리 떨어진 뒷사람과 이야기를 주고 받거나 아예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자는 의원도 있었다.

의장의 회의진행방식도 문제가 많았다. 발언신청을 묵살하고 진행하는가 하면 별 이유없이 휴회를 강행하려고 하여 동조하는 의원들과 불만을 품은 의원들 간에 옥신각신 샅대질을 하는 등 분위기가 험악했는데 10분간의 휴회로 합의를 보고 가까스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10분 30분이 지나고 의원들을 찾는 방송이 나간 후 한 40여분쯤 뒤 속개되더니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폐회하는 바람에 열심히 뒷야기를 기다린 우리들은 너무 기가차서 말도 안나왔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이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점을 느끼게 된 것만도 큰 성과라고 생각했다.

특별칸 : 지방의회 활동에 도움되는 단체

자원봉사 관련단체

○ 지역복지봉사센터

지역복지봉사센터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부설기관으로 한국 최초의 자원봉사자 인력은행이다. 1978년 9월 20일에 사회봉사안내소 자원봉사국으로 시작되었다가 1991년 3월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 센터는 ‘복지전화’를 통해서 전국의 사회복지기관과 단체를 안내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고 받게 하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훈련하여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 배치하고 있다.

○ 재가복지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서울 서초구 양재동 353-4 (02)573-8939

전국의 모든 지역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1992년에 전국의 144곳에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 편모 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계층과 지역사회내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등의 부설로 운영되고 있다.

○ 여성자원활동인력은행

주소 : 한국여성개발원 서울 은평구 불광동 1-363 (02)356-0700

여성자원활동인력은행은 여성 유희인력의 활용과 사회참여의 확대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1984년에 한국여성개발원의 부설로 설립했다. 이 인력은행은 자원활동자(봉사자)모집 교육 배치 사후관리사업, 자원활동자 활용기관 모집 활동자와 기관간의 연락조정 활용기관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한다. 현재 전국 14개지역에 지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 여성자원활동센터

전국의 모든 도청, 시청, 구청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분야에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1991년부터 전국의 시청과 구청에 125개소, 14개 지역에 시범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사업의 주체는 정무제2장관실과 도청, 시청, 구청의 공공기관이다.

○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목산제일빌딩 10층 5호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는 자원봉사를 통한 사랑의 사회공동체를 건설하고자 1986년 12월 13일에 설립되었다. 이 연구회는 자원봉사자 모집 양성 배치와 사후관리, 자원봉사 지도자 양성, 자원봉사에 관한 홍보출판, 조사연구, 국제교류사업,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사업 등을 한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의 이름으로 ‘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와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의’등 두가지 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회의 특징은 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병원등에 배치하고 재가 호스피스도 시도하고 있다.

○ 전화 상담기관

생명의 전화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507호) (02)763-9191

사랑의 전화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5-66 (02)715-8600

청소년 대화의 광장 서울

대한가족계획협회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52-45 (02)855-0625

청소년상담실

서울시청소년사업과 서울 용산구 갈월동 101-5 (02)797-8081

서울YMCA청소년상담실 서울 종로구 종로2가 9 (02)735-1551

서울YMCA청소년쉼터 서울 종로구 가회동 9-1 (02)747-7417/9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서울 중구 수표동 27-1 (02)265-2226

씨들의 전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3(505호) (02)784-1510

참교육상담소

서울 영등포우체국 사서함 287호 (02)325-6450

따르릉선생님

청소년상담연구소 서울 서초구 반포1동 748-2 (02)543-3275/6

나눔의 전화 서울 중구 명동2가 1(카톨릭회관4층) (02)752-4411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27	(02)732-3183
한국어린이보호회	신나는 전화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6-9	(02)336-6233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상담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6	(02)841-9901
홍사단청소년상담실	서울 종로구 동숭동 1-28	(02)744-2056
부산시청소년상담실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225-3	(051)804-5001
대구시청소년종합상담실	대구 북구 고성2가 8-3	(053)351-2000
인천시청소년상담실	인천	(032)
광주시청소년상담실	광주 동구 대인동 154(무산빌딩4층)	(062)528-2000
대전시청소년상담실	대전 중구 문화동 1-13	(042)257-2000
경기도청소년상담실	수원시 장안구 신평동 30	(0331)251-3312
강원도청소년상담실	춘천시	(0361)
전북청소년상담실	전주시	(0652)
충북청소년상담실	충북 청주시 사직1동 908	(0431)58-2000

참고문헌

1. 姜天求, 崔旼洙 편저, 1991. 지방의회 회의운영. 서울 : 중암.
2. 민준기, 1993. “지방자치의 제도화와 조직문제.” Pp.694-710
민준기 편저, 정치발전의 이해. 서울 : 법문사.
3. 박경수, 1992. 지자제 :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구조적 실현
과 지역사회발전. 서울 : 해돋이
4. 서우선, 1992. 지방의회운영방법론. 서울 : 법문사.
5. 이승熙 편저, 1992. 지방자치제를 위한 의회식 회의 진행법.
서울 : 송원문화사.
6. 林敬鎬, 1991. 지방의회론. 서울 : 대영문화사.
7. 조창현, 1993. 지방자치론. 서울 : 박영사.
8. 최인기, 이봉섭 공저, 1993. 지방의회론 : 이론과 실제. 서울 : 법문사.
9. 하형찬, 1988.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 연구. 영남대학교 경영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10. 현대사회연구소 편, 1993. 지방자치연감.